

제40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2월16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6)
1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0)
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9)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5)
1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7)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6)
1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8)
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0)
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5)
1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
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3)
2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4)
2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1)
2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3)
2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4)

30.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27)
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9)
3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3)
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3)
3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0)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3)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6)
4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0)
4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2)
5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5)
5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16)
52.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7)
5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8)
5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5)
5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0)
5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1)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6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8)
6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2)
6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5)
6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
6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5)
65.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54)
6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0)
6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73)
7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6)
7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766)
7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
7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4)
7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8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
81.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4)
8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3)
90.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
9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3)
9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5)
9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4)
9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4)
9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9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9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9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
9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9)
1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0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0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6)
10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5)
10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0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6)
107.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8)
1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1)
1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5)

1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1)
11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4)
1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4)
1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8)
1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3)
1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9)
11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1)
117.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2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24.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2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2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2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2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5)
13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4)
13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3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상정된 안건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 7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6) 7
1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0) 7
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9) 7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5)	7
1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7) ...	7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6) ...	7
1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8)	7
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1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0)	7
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5)	7
1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	7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	20
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3)	20
2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4)	20
2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1)	22
2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2
2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3)	22
2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4)	22
30.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27)	22
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9)	22
3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22
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3) ...	22
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3)	22
3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4
3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4
3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0)	24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4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4
4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3) ...	24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4
4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4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6)	34
4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0)	36
4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6
4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6
4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6
4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6
4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2)	36
5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5)	36
5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16)	36
52. 영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7)	36
5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6
5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8) ...	36
5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6
5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5)	36
5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0)	46
5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1)	46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6
6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8)	51
6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2)	51
6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5)	51
6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	51
6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5)	51
65.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54) ...	51
6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0)	51
6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1
6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1
6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1
7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1
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1
7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1
7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1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73)	51
7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6) ...	52
7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766)	52
7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 ...	52
7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4)	52
7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2
8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	60
81.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0
8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4)	60
8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0
8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0
8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0
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0
8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0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0

(10시21분 개의) 다.

○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정무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 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전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방역 대책이 일부 조정되어 청사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회의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6)
1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0)
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9)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5)
1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7)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6)
1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8)
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0)
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5)
1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의사일정 제22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 진행에 특별히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기동민 위원 어제 한동훈 장관이 저희들한테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 진행에 적합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어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가 이어졌었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계획이 있느냐? 보고 받은 바 없다. 그래서 설마설마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들려온 소식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악은 이렇게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선은 왜 이토록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2023년 2월 16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무참하게 유린되고 학살된 그런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 우리 기동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기동민 위원 민생이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서민들 살기 진짜 힘들고요.

난방비·가스비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음료수·식품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환율·금리·유가 등 어느 하나의 지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유상범 위원 기 간사님, 제가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와서……

○기동민 위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유상범 위원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하고 오시면 되지.

○기동민 위원 좀 들어 보세요.

과연 정권이 하는 일들이……

○유상범 위원 뭐 하러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주장을 하세요.

○기동민 위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고 정치 보복 수사를 하는 것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해야 될 일인 거냐? 민초들의 삶을 돌보는 고유의 정권의 역할은 어디로 가 버린 거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이 정권, 과거의 정권이 가졌던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과 형평·공정성도 잃어버린 무도한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균형과 보여주기식 모양새도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얼마나 많은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이 있습니까? 얼마나 더 증폭되고 있습니까? 1심 판결 속에서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1차 주가 조작 사건 때 손절하고 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간사님!

○유상범 위원 소통관에서 하면 되지, 여기서 뭐 하러 의사진행발언이라는 식으로 하시냐고.

○기동민 위원 2차에 진행된 사건 역시 다 포함되었다는 것이 대중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판결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

시오.

○기동민 위원 법무부장관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니 지켜보고 있겠지만 과연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게 쏠린 국민적 의혹과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무마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야 될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다더니……

○기동민 위원 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 단 하나의 증거라도 국민들한테 내놓고 설득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 그만하십시오.

○기동민 위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진술이 바뀐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보냈다고요? 명백하게 민주당을 길들이고 국민들 앞에 모욕 보이고 그리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불과하다. 단호하게 부결시킬 거고 거칠게 싸울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요.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 위원 다만 저희들은 민주주의와 민생 표방하는 정당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가 파장되고 또 검찰청에 물려가고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의할 건 최대한 항의하고 민생이라는 양 날개의 한 축,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더불어서 이 난국을 수습해 갈 것이고, 물가 폭등 등 민초들의 삶을 부둥켜안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진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 회의 역시 분기를 참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상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혁 위원 30초만……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야당 위원으로서 충분히 의견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130건이 넘는 법률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전체회의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서 해야 될 발언이 있고 다른 곳에서 다르게 의사 표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제지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이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제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은 그야말로 의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동민 간사님, 양당 간사님의 한 분으로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할 분이 의사진행발언하신다면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박범계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예, 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조금 듣기 거북해도 끊지 말고 참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네.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올 때마다 그 전후로 늘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비교적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한동훈 장관이 나갔다 온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성호 의원이 면회를 한 내용들이 그대로 수사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교정본부 통해서 장관이 보고받고 법무부에서 유출된 것 아니면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이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 인멸 의혹을 아마 문제 삼았을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증거 인

멸 정황이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김도읍 법사위원장께서 평의원의 입장으로 법무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그 접견을 했다는 내용을 법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도주 우려도 없고 소환에 다 응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웠던, 가까운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증거 인멸의 정황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범계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우리 법사위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전 국민에게 이 전후의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입니다.

따라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께서 언제, 어느 시점에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받은 내용을 어떻게 알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모두, 법사위원 모두,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 그렇지 않으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 김도읍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위원 그것은 어제 김도읍 위원장한테 배운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장은 분명하게 소명하고 분명하게 납득 있는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혼이 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위원장 김도읍 말 가려 가면서 하고, 박범계 위원.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리고 김도읍 위원이, 박범계 위원 말씀대로 김도읍 위원이 개인 법사위원으로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그걸 받았습니다. 그게 박범계 위원한테 그렇게 겁박받고 협박받아야 될 일입니까? 장관까지 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가려 가면서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답게 하셔야
지. 제가……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접견 내용이 다 유출
이 됐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위원장 김도읍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김승원 위원 아니,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그
내용들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김승원 위원, 발언
기회 갖고 하시고.

제가 말씀을……

○김승원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
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 나도 알아들었어
요.

○김승원 위원 해명을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도읍 알아들었는데 그게 의사진행발
언과 무슨 관계가 있고……

○김승원 위원 해명을 하시라, 본질에 답을 하
셔야지요.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 해명을 하라니
요? 김승원 위원은 의정활동 모든 것에……

○김승원 위원 본질에…… 아니, 박범계 위원님
이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은 의정활동 모든
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까? 다 설명을 하고
의정활동 합니까?

○유상범 위원 김승원 위원은 그러면 모든 자료
받아서 언론한테 준 것 다 해명합니까? 해명 그
거 다 해요?

○김승원 위원 아니, 못 알아들으신 줄 알고 말
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못 알아들다니요? 의정활동을……

○김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김남국 위원 어느 시점에 그것을 자료 요청했
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남국 위원!

○유상범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 전과
4범인 당대표가……

○김남국 위원 저희는 고발 사주한 정당이 아닙
니다! 고발 사주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당이 아니
예요.

○정점식 위원 고발 사주를 누가 해? 누가 했어?

○유상범 위원 고발 사주 누가 했어요?

○김남국 위원 전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

다.

○정점식 위원 전범이라니 무슨 전범?

○유상범 위원 전범이라니 무슨 전범이 있다는
거야.

○김남국 위원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잖아
요.

○유상범 위원 누가?

○김남국 위원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의 누가?

○정점식 위원 당신들이……

○김남국 위원 당신들이라니요, 정점식 위원님!

○위원장 김도읍 김남국 위원!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프레임이고……

○김남국 위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되어서 부
끄러움이 없으세요?

○정점식 위원 없어.

○김남국 위원 없어요?

○정점식 위원 그럼.

○박주민 위원 아니, 거의 똑같은 고발장이 접
수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김남국 위원 저는 너무 뻔뻔해서 어떻게 그렇
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뻔뻔하다니 누가 뻔뻔해?

○유상범 위원 나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김남국 위원 공익제보자의 진술도 있고 텔레
그램도 있고 그렇게 자세하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반성하지도 않고!

○정점식 위원 누가 반성을 해야 돼요? 누가 부
끄러워해야 돼. 당신들이 부끄러워해야지요.

○위원장 김도읍 자, 국민의힘 위원님들.

○김남국 위원 국민의힘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지요.

○정점식 위원 민주당이 부끄러워해야지.

○김남국 위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수사
받고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인데 저희가 부끄러
워합니까?

○유상범 위원 부끄럽지 않아요?

○정점식 위원 사상 초유의 야당대표 구속영장
청구라며.

(장내 소란)

○기동민 위원 여당이 수습을 해야지 더 난장판
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수습을 해야지.

○유상범 위원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1명만 하면 되지 돌아 가면서 뭐 하는 것인데요, 이게.

○기동민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

○조정훈 위원 이제 회의 진행하시지요.

○김남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그 자료 요청을 했는지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장관님이.

○위원장 김도읍 조용히 해요.

○정점식 위원 아니, 그거 자료 요청한 것은 기록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걸 보면 되지.

○김남국 위원 아니, 기록을 줘야지 보지요. 저희한테 주지도 않아요, 법무부에서.

○유상범 위원 1명만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1차적으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지금 정무위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 기동민 간사님 이게 뭐니까?

○기동민 위원 아니, 룰과 원칙을 지키려면……

○위원장 김도읍 가만있어 봐요. 사전에 이야기……

○기동민 위원 제1야당 대표에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을 보냅니까?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기동민 위원 무슨 증거를 인멸했어요, 도주의 우려가 있어요?

○위원장 김도읍 아이고, 참.

○기동민 위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정치적 발언 못 합니까?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세요, 여당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 의사표현도 못 해요? 여당이 그런 정도 야량도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의회를 운영합니까? 야당이 얘기하면 좀 들으시지 뭐 그렇게……

진도 나가세요.

이런 때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자락도 깔아 주고 명분도 주고 그러는 게 여당이지.

○박형수 위원 그래서 참고 있잖아요. 그만해요.

○기동민 위원 뭘, 참는 게 그렇습니까?

○조정훈 위원 그냥 회의 진행하시지요.

○기동민 위원 아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회의 파투 내고 나갔으면 좋을 그런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니까요.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시켜 달라고요.

○위원장 김도읍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을 원하

시는 분들이 발언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동민 위원 최대한 절제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자, 기동민 간사님, 잠시만요.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십니까? 해명을 하십니까?

김승원 위원, ‘해명을 요구한다.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해명하라’,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꼼꼼이 되짚어 보시기를 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논쟁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박범계 위원님, 민주당 위원님들은 왜 그래요? 뭘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끌어 붙여도 좀 일리가 있게 끌어 붙이세요. 본인도 아마 억지 주장을 하신 걸 알고도 그런 말씀 하신 걸로 나는 짐작이 갑니다만, 뭐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 말씀을 하셔도…… 이 이야기, 박범계 위원, 내가 부탁드립니다. 이 회의장 밖에서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박범계 위원 텔레비전에 나오는 본인 얼굴이나 좀 보시오.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 이 이야기,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밖에 가서 한 번만 더 하세요. 내 명예훼손으로 바로 법적 조치할 거예요.

○박범계 위원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도읍 하실 수 있겠어요?

○박범계 위원 나도 김도읍 위원장 고발할 거요.

○위원장 김도읍 하실 수 있겠어요?

○박범계 위원 김도읍 위원장, 저기 텔레비전에 나오는 본인 얼굴이나 좀 보라고.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 참 일국의 법무부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박범계 위원 김도읍 위원장이 나를 법무부장관 한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언제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위원장 김도읍 그걸 느꼈어요?

○박범계 위원 할 말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도읍 여러분, 제가 법무부에 요구한 자료 보고 싶습니까? 보여 드리면 박범계 위원이 자리에서 바로 정중한 사과 시킬 용의 있습니까? 하실 용의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그러면 자료,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박범계 위원 내가 그걸 밝혀 달라고 한 거예요. 쥬 보세요, 한번.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박범계 위원이 모략, 계략, 비열한 공작이라고 한 것 어느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박범계 위원, 그 기사 찬찬히 읽어 보고, 읽으면서 내 이야기 들어요.

자, 내가 요구한 자료, 받았던 자료 그거 확인되면……

○박범계 위원 김도읍 위원장, 우리가 조선의원할 때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소? 그렇게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 아니,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니고……

○박범계 위원 존칭을 써요, 존칭을.

○위원장 김도읍 모략, 계략, 비열한 공작이라고?

○박범계 위원 김도읍 위원장, 존칭을 쓰시라고.

○위원장 김도읍 자, 확실하세요. 내가 법무부에 요구한 자료와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 박범계 위원,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 있어요?

○박범계 위원 공개부터 하세요, 일단.

○위원장 김도읍 용의 있냐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열한 공격을 하더라도 박범계 위원이 그 약속을 안 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열한 모략을 하고 계략을 하고 저에 대한 저열한, 비겁한 공작을 해도 박범계 위원이 사과할 용의가 없다면 나는 이 자료 공개 안 합니다.

○박범계 위원 나한테 마이크를 주세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야, 박범계 위원님, 내가 자료 공개할 테니까 보시고 정중한 사과를 하실래요?

○박범계 위원 나한테 마이크를 달라고. 나한테 마이크를 주시라고.

○박주민 위원 아니, 대화를 하면서 한 명은 마이크를 안 주고……

○기동민 위원 일방적으로 위원장님 혼자 마이크 넣고 말씀하시는 것 그만하시지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권인숙 위원 적당히 하시지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그만하다니요, 그만하다니요.

○기동민 위원 마이크를 같이 넣어 주시는 게 아니면 위원장님 혼자 너무나 많은 말씀 하고 계

시잖아요.

○권인숙 위원 예, 상호적인 게 아닌데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 내질러 놓고……

○권인숙 위원 뭘 내질렀어요. 그 정도를 했으면 됐지요. 적당히 하시지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기동민 위원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됐지요.

○박범계 위원 내가 읽어 드릴게요.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정진상 씨에 대한 구치소 면회는 총 70회 이루어졌다. 일반접견은 12회, 변호인 접견이 57회였고 장소변경접견은 정성호 의원이 유일했다. 정 의원이 특별면회를 한 지난 1월 18일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압송된 다음 날이었다. 정 씨는 작년 11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조선일보 기사가 맞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거기에…… 틀렸어요, 그 기사.

○박범계 위원 어떤 게 틀리지요?

나도 마이크 좀 달라고요.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박범계 위원이 사과한다고 이야기하면……

○박범계 위원 무슨 사과를 해요? 내가 내용을 알아야 사과를 하든 말든 하지!

○위원장 김도읍 아니, 내가 보여 줄게요.

○권인숙 위원 이 정도 얘기하실 거면 마이크 주세요. 상호적인데 이건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유상범 위원 아니,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됐고 그리고 김도읍 위원장님을 사실 인격적으로 공격한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고 하면, 모략이고 계략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다고 하면 자료를 보여 주면 당연히 사과할 정도는 돼야지요. 그 말씀 책임 없이 하셨어요? 그 정도는 해야지.

○김남국 위원 마이크부터 넣어 주세요, 마이크.

○권철승 위원 아까 박범계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앞에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그 말만 딱 따지지 말고, 앞에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 모략이고 계략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것만 딱 따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과 다르지요.

○위원장 김도읍 지난 문제인 정권 때는 여당 위원들이 이런저런 걸 요구를 하면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박범계 위원 나한테 마이크를 주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김도읍 자, 제가 참 위원장 하면서 저는 삶을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박범계 위원도 아시다시피……

○권철승 위원 아니, 마이크를 독점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완전 불공정해요.

○최강욱 위원 마이크 끄고 말씀하세요. 신상발언 마이크 끄고 하시라고.

○김승원 위원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것은 마이크 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평해야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 의정활동 좀 잘 배우세요. 잘 배우시라고.

자,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김남국 위원 그런 발언 자체가 위원을 존중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어째 오늘은 또 ‘이 사람’이 아니고 ‘김도읍 위원장님’, 김남국 위원.

자, 제가 자료를 공개해 드릴까요?

○박범계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도읍 이 자료 양식을 보면 박범계 위원님, 양식을 보면……

○박범계 위원 나한테 마이크를 달라고요. 내가 정리를 좀 해 드릴 테니까 마이크를 주세요!

○위원장 김도읍 어떻게 정리하시려고요.

○박범계 위원 혼자 그렇게 떠들지 마시고.

○위원장 김도읍 떠들다니요.

자, 제가 어이는 없지만 자료를 공개할게요.

○박범계 위원 아니, 저한테 마이크를 먼저 달라고요. 혼자 그렇게, 지금 몇분간 혼자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 김도읍 해명하라며, 해명하라면서요.

○박범계 위원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 김도읍 아까 다 했잖아요.

○박범계 위원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밖에 나가서 하세요.

○박범계 위원 그러지 마시고 주세요.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이 낭패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박범계 위원 마이크를 좀 주세요, 마이크.

○위원장 김도읍 자, 민주당 위원님들 보십시오.

○박범계 위원 저한테 마이크를……

○김남국 위원 복사해 가지고 이것 좀……

○위원장 김도읍 아니, 이거 보시라고.

기동민 간사님.

○권인숙 위원 전달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

지 말고.

○위원장 김도읍 자, 보세요.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만큼 충분히 말씀 주셨고 기록까지 공개했으니까 박범계 위원님께 반론할 수 있는 기회는 한 3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됐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권인숙 위원 주시지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는 것 아닙니다, 진짜.

○기동민 위원 이게 중계가 되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거니까 박범계 위원님께 말씀 기회 주세요.

○박형수 위원 사과할 기회는 줘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사과를……

○권인숙 위원 예, 주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 권인숙 위원님.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김도읍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유상범 위원 우리가 이렇게 기동민 간사님처럼…… 주장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은 위원장님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고 위원장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마치 가담한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몰아간다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동민 위원 박범계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유상범 위원 결국은 박범계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위원장님께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박범계 위원 저한테 마이크를 달라고요.

○김승원 위원 왜 그러실까요? 제가 무슨 틀린 말을 했나요? 답을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을 뿐인데요.

○유상범 위원 취지가 지금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김승원 위원 질의에 대한 답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을 뿐인데.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지요.

○권인숙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 이견 아니잖아요. 말이 다르잖아.

○기동민 위원 이게 막 진행이 됐잖아요. 위원장님 혼자 마이크 켜고 지금 한 20분 이상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러면 위원장한테 모략이니 계략이니 비열한 공작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박범계 위원님 말씀 뒤이어서 계속하신 말씀은 위원장님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위원장님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김승원 위원 박범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한 거지요.

○박주민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보신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마이크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권인숙 위원 이제는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해 보세요.

3분 드리세요.

○박범계 위원 김도읍 위원장께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김도읍 의원께 요구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기사들을 보면 적어도, 2주 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2월 초일 겁니다. 2월 초에 검찰이 정성호 의원과 관련된 그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으로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대한, 검찰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겠습니까, 야당 의원에 불과한 사람이? 그 부분은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가서 정진상·김용두 사람을 접견한 내용이 검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특별한 정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물었을 것이라고 나는 사료합니다.

두 번째, 때 맞춰서 김도읍 위원장께서……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 개 언론에 이 정성호 의원의 특별면회와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의 이름을 딱 박은 그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정성호 의원이라고 이름이 박힌 그러한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는, 그러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면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에 의하면 본인이 교정본부장한테 정식으로 보고받기 이전에 검찰에서 그러한 사정을 파악했다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라는 기사들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김

도읍 위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시점,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그 시점, 그리고 이 내용은 단순히 횡수에 불과한 자료제출 요구이지만 김도읍 위원장, 김도읍 의원 이름으로 찍힌 언론의 보도들 그리고 그 이전에 검찰에 의한, 서울중앙지검에 의한 수사 질문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이 시점이 절묘하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이 없으니까—소명도 안 돼 있고—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조차도 소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무슨 바깥에서 때려 가지고 하듯이 우회적으로 타격해 가지고 증거 인멸의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김도읍 위원장이 거기에 연계된 그러한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왜 그러한 내용이 보도됐는지 그리고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 이해한 적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제가 의정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김의겸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가져도 돼요. 메모하실 것 없이 민주당 가져가세요. 접견 횡수만 딱 나와 있지요? 그리고 법무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저한테 온 답변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알려 드릴 수 없다……

○박범계 위원 그거지요.

○위원장 김도읍 딱 접견 횡수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조선일보 기사는 저하고 일면식도 없고 전화 한 통 한 사실도 없는 사람일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박범계 위원 ‘거예요’?

○위원장 김도읍 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허언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알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이게 왜 연결이 되지?’라는 이야기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왜 지금 그런 것을 하느냐, 그런데 제가 야당 할 때도 그렇고…… 한번 볼까요? 유재수가 누구입니까? 저희들 야당 할 때 치열하게 싸웠던 것 아닙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비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우리 보좌진에서 뽑아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

은, 우리들이 야당으로 의정활동할 때부터도 주요 인사들 접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제가 봐 왔던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보여 드릴게요.

박범계 위원님, 저 김도읍이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것 아실걸요? 그 기사를 보면, 거기 보십시오. 거기에 정성호가 어디 나오고,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좀 보여 드려,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박범계 위원 끝까지 한번 해 보자고.

○정점식 위원 뭘 해 봐요? 할 게 뭐 있습니까?

○박범계 위원 간사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김도읍 그리고 지금 정진상·김용 접견 관련해서는 2023년 2월 13일 요구했고 답변 일시가 2023년 2월 13일입니다. 그다음 이화영·정진상·김용 장소변경접견 관련 요구 일시 2023년 2월 15일 요구했고 답변 일시 2월 15일입니다. 다 뺏수만 나왔고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다칠 일 합니까, 전직 장관님?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 이제 그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 위원장한테 모략, 계략, 비열한 공작이라고 내질러 놓고……

○기동민 위원 충분하게 발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의 논점도 아니고 그리고 법안 심사이고, 이런 정도에서 그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똑같이 마이크 켜고 두 분이 한번 해 보시지요. 들어 볼게요. 혼자만 계속 마이크 켜 놓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권철승 위원, 권철승 위원 같으면 이런 이야기 듣고 가만있겠어요?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동시에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장이 구속영장 청구에서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데 관여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철승 위원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그렇잖아요.

○권철승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 다시 들어 보십시오.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는데 이렇다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동혁 위원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전제 조

건이 있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권철승 위원 아니, 전제 조건이 있는데……

○유상범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장동혁 위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제를 깔고 일부러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권철승 위원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양쪽에서 두 분 다 마이크 켜 놓고 하시라고요, 들어 볼 테니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훈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권철승 위원 일방적으로 혼자 계속 말씀하시면 이게 경우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권철승 위원 같으면 이런 모략을 받고도 가만있겠어요?

○권철승 위원 가만 안 있었잖아요.

○최강욱 위원 가만있으라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동등하게 쓰시라고요.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걸 또 불평불만을 해요?

○권철승 위원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인숙 위원 같이 해야지요. 넘어가시든지요, 그 정도 했으면.

○위원장 김도읍 뭘 같이 해?

○권철승 위원 뭘 같이 하나니요! 그러면 혼자 할 겁니까?

○김남국 위원 저도 김도읍 위원장님한테 모략당했어요!

○유상범 위원 뭘 모략당해?

○김남국 위원 제가 판사 집단행동을 사주했다고 하면서 2020년에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뭘요?

○기동민 위원 이제 그 정도 하셨으니까……

○김남국 위원 아무 근거도 없는데, 판사하고 연락도 없는데 저보고 집단행동 시켰다고, 사주했다고. 김도읍 의원실이잖아요, 김도읍 의원실!

○위원장 김도읍 또 뭘 소리예요?

○김남국 위원 2020년 기사 찾아봐요!

○위원장 김도읍 그 기사 찾아 가지고 와요.

○김남국 위원 그때 사과했어요?

○박범계 위원 김남국 위원, 잠깐만.

오늘 아침에……

○김남국 위원 내가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박범계 위원 김남국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아침 조웅천 의원이 그러면 검사는 수사

목적……

○**김남국 위원** 본인이 한 일을 생각해야지, 진짜.

○**박범계 위원** 검사는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장한테 자료제출을 요구받아 가지고 이것을 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시다만 이것은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자료이고 또 그 시점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얘기와 거의 동시에 나온 거거든요.

○**유상범 위원** 전제 사실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장동혁 위원** 나간 게 없는데 왜 나간 걸 전제로, 그 기사를 뭐 하러 읽어 주시는지 모르겠네.

○**정점식 위원** 박범계 위원, 답변 내용 자체를 읽어 보지도 않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권인숙 위원** 이제 정리하고 가지지요.

○**위원장 김도읍** 제가 우리 방 식구한테 물어보니까 2월 6일 날 이 자료가 문화일보 단독보도로 나갔대요, 2월 6일 날. 한번 봐 보세요. 뒤에 민주당 보좌진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2월 6일 날 문화일보 단독보도로 나갔고, 이 조선일보 기사는 제가 알기로 그때 확인해 보니까 아마 법조기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면식도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측건대 이 조선일보 법조기자가 문화일보 접견 횟수 이 부분을 보고 기사를 쓰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이고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제 회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3년 2월 6일 문화일보, 여기 있네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위원** 턱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박형수 위원** 뭐가 턱도 없어요? 저게 문화일보에 이미 나온 건데 그걸 어떻게, 그 이후에 조회한 사람이 거기하고 연락했다고요? 도대체 논리가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일을 이렇게 벌여 놓고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박주민 위원** 한 10분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들,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은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새벽 3시까지 먹었다 해도 넘어가던데 저도 이제 이쯤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사과하실 분도

아니고.

잠시 정회할까요, 아니면 시작할까요?

○**기동민 위원**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정회를 합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 정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각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및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15조는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등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로 확대하는 한편,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 현행법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인재의 분야가 고용·노동, 창업, 주거·교통, 교육 등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청년인재가 위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청년인재’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4조의2는 국가 및 지자체의 청년시설 설치·운영, 보조 및 운영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국가와 지자체의 자체사무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이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재정상 원조’로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입법례를 감안하여 개정안 같은 조 제3항의 청년시설 운영의 위탁 근거를 제2항으로 하고, 위탁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3항으로 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안은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하는 조치명령권의 남용방지를 위해 긴급성·명확성의 요건을 추가하고 조치명령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하며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한 결과 안 제416조에서는 조치명령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제4항에서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조치명령 위반 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수범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이행이 지연되거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는바 불합리하게 처벌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사 입법례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를 참고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현행법상 안전점검과 개선요청 대상이 각각 소화시설과 방화시설로 상이하고, 소화시설은 화재의 예방을 위한 시설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방화시설은 이 법의 제정 당시 소방법이 그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문구만으로는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요청의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요청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안 제24조제2항은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로 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가 아닌 본안 판단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수정하였고, 위원장이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과 그 기산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32조의2는 타인을 비방·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답변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거나 보정요구 없이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 없이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하를 하도록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균형법상 상관살해의 죄 및 그 예비·음모죄, 초병 살해의 죄 및 그 예비·음모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에 추가하였는데 예비·음모죄보다 중한 죄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을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미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사일정 제7항, 8항, 11항, 13항, 17항, 18항, 20항 등 7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9항, 10항, 16항 등 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님,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님,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대체토론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수소법원에서 각 절차…… 약관의 규제, 2항에서 6항을 보면 분쟁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이, 이렇게 법안을 정리하셨는데 지금도 법원에서는 필요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분쟁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 지휘를 통해서 소송 절차를 일단 일시 중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입법화하게 되면 사실상 법원 판사가 소송 지휘를 갖고 있는, 소송 지휘권이라는 자체를 타 법으로서 제한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송 수행과 관련된 법관의 재량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의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법원과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같은 내용을 2소위로 회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법안도 취지는 거의 동일한 취지로 지금 법안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2항에서 6항의 법안은 2소위로 회부를 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것과 같이 법원과 우리 관계기관들이 조율을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는 게 맞다, 이것이 소위 체계의 적합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법부의 권한과 행정부의 행정행위 사이의 어떤 충돌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2소위로 회부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 이 부분은 다른 법사위 위원님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그것 관련해서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가지고 법원행정처와의 협의가 부족하다 그런 점이 문제가 돼서 법안2소위로 회부가

됐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가지고 저희가 지금 법원행정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일단 법원행정처 측에서 지난번에 소위로 간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법안들, 수소 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 관련해서 가지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저희가 구두로는 의견을 들었는데 한 다음 주 정도에는 그걸 갖다가 서면으로 저희한테 줄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만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약관법 등 상정된 법안을 갖다가 전체회의에 이렇게 계류를 시켜 주시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더 안심될 수 있을 텐데 위원님들께서 어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법안 2소위로 이렇게 보내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2소위 위원장이신 정점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이번에 의욕을 가지고 2소위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 아마 다음 달에 신속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건 어차피 같은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2소위에서 신속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소위로 회부를 하시지요.

○기동민 위원 오랜만에 정부 편 좀 들어 주려고요.

2소위로 너무나 많은 법안을 넘기면, 쌓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소위에서 신속하게 정리하고…… 또 금방 공정위에서 나와서 말씀 주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요.

○정점식 위원 어차피 이것하고 같이 통과돼야 될……

○유상범 위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체가……

○위원장 김도읍 2소위에 있지요, 지금?

○유상범 위원 예, 지금 가 있으니까요.

○기동민 위원 2소위에 넘어가서, 2번부터 6번까지는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런데 공정위 의견은 거기서 입장 정리는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해 달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도읍 공정위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신속하게만 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정점식 위원 만일 다음 주까지 법원행정처와 의견 조율이 끝난다면 다음 주에 2소위가 있습니

다. 그러면 상정해서 같이 논의를 할게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이게 그런데 다음 주에 공정거래법을 논의해 주시……

○**유상범 위원** 같이 논의하면 됩니다. 이것 회부해서 같이 논의하면 바로 마무리됩니다.

○**기동민 위원** 국회 법사위를 못 믿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도 그렇게 내놓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2소위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안건 1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법무부 수정의견대로 법조문에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처벌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법무부 수정의견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13번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김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셨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김승원 위원** 저희가 상호신용금고도 그렇고 저축은행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10년 주기마다 이렇게 부실 사태를 불러와서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 인터넷전문은행도 그래서 어떤 영업 목적이라든가 자본 조달이나 등등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갖다 어느 특정 목적하에 풀어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런……

○**김승원 위원**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러면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초단기자금(콜론) 그다음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 등등, 정하는 신용공여를 하겠다는데 이 신용공여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어느 기관일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지금 거기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 개정안의 취지는 신용공여 대상이, 신용공여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한은 기준 예치금, 국채·지방채, RP, 콜론,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에 속하지 않은 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국채의 경우에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이 있으니까 금융기관도 대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신용공여의 한도랄까요, 그것은 혹시 설정이 돼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이 개정안의 목적이 신용공여를 해서 불안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신용공여…… 저희가 RP나 이런 걸 이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더 불안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승원 위원** 물론 법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그것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가 부실 사태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규제하거나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놓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여쭙보는 건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 일반적인 한도가 있는데 일반적인 한도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종류를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한도는 원래 한도대로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에 활용을 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지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도는 마찬가지로인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방법을 더 열거를 하는 건데 방법 열거가 약간 불안할 수가 있어서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이 된다고 명확히 규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예컨대 인터넷전문은행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하고 나서 자산 건전성을 위해서 이런 콜론 같은 것을 차입을 하는 거겠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김승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격적인 대출로 인한 부실 사태화 이런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그런 체제로 계속 하는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한도가 이미 있고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불안하면 차입하는 방법을 기존보다 넓혀 주면 훨씬 더 편안하게 건전성 유지를 할 수 있다 그 정도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보고의무 같은 것도 있습니까? 자산 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콜론이라든가 이런 것 신용공여를 받을 때 금융위원회에다가 보고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전부 보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위험성도 금융위원회에서 감지할 수 있는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저희가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제 의견은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장혁 부위원장님, 제가 좀 여쭙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 대체토론시에 박주민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께서 2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결론을 내기를 일부 쟁점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해 났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다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박주민 위원님과 체계·자구 수정 협의를 마쳤고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도 마쳤습니다.

먼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이동형 영상기기로 촬영할 때 표시 예외를 두었던 제25조의2 3항, 4항은 말씀드린 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화된 결정, 제37조의2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의 ‘자동적 처분’을 제외하여 법률간 적용 관계를 명백하게 하였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체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개정 사항 제28조의2도 가명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이견이 모두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주민 위원님, 보고 받으셨나요?

○**박주민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해소됐나요?

○**박주민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항, 제8항, 제11항부터 제13항, 제15항,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22항 법률안은 대체토론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연 차장님, 윤수현 부위원장님, 김소영 부위원장님, 안성욱 부위원장님, 윤종진 차장님, 최장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

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3)

2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4)

(11시18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관련 내용을 제85조에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입법 형식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항을 신설하는 대신 제1항의 비용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이 중앙분리대, 도로표지시설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주체인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간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로의 부속물 등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바 법률의 체계상 2건이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이원재 국토교통부제1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23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의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행법에도 제8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조

례로 이미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운영 관련해서 다수의 조례를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2항이 선언적 의미만 가질 것이고 입법적인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 구체적 사항을 적시해서 오히려 해당 요건에 구속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려고 해도 그것을 제한할 수 있어서 과연 이런 입법 방식이 본래 입법 목적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미 다른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항을 다시 두는 그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2소위에 회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의사일정 24항은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위원회에 다른 법률이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이 넘어오는 것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왔다가 같이 심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다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지금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또 논의 중에 있지요, 기본법이 되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25항도 그때 한꺼번에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본회의에 올라가서도 합리적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게 괜찮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저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도 전체회의에 그냥 계류시켜서 상법 개정안이 재무상태표로 변경돼서 오면 그때 일괄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상법 개정안이 지금 1소위에 있지요?

○기동민 위원 1건인데……

○유상범 위원 아니요, 어차피 같이 해서……

○기동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단어 변경하는 건데 이거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정점식 위원 개정되고 난 뒤에 용어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기동민 간사님 바쁘시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23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1)

2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3)

2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4)

30.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27)

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9)

3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3)

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3)

(11시24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4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의사일정 제30항, 제32항 및 제33항, 3건의 법률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

항, 제31항 및 제34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중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 부칙이 누락된 것을 보완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시행일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여권법을 비롯한 3개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려는 것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여권법 제12조제3항제1호가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항을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9항, 제31항, 제34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이도훈 외교부제2차관님, 김기웅 통일부차관님,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의사일정 제30항, 제32항, 제33항, 총 3건의 법률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점식 위원 잠깐만, 전문위원. 지금 여권법 제12조제3항제1호가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항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을 어디서 개정을 한 겁니까? 지금 자

료에는 안 보이는데?

○전문위원 **한석현** 당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정점식 위원 아, 제가 그 앞의 것을 봤다.

○위원장 **김도읍** 권철승 위원님.

○권철승 위원 권철승입니다.

29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보통 연간 몇 회 정도 개최가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 **이도훈** 연간 1회 정도 개최됐습니다.

○권철승 위원 연간 1회라고요?

○외교부제2차관 **이도훈** 예.

○권철승 위원 공무원들로만 구성하고 이제 협의회로,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이도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민간위원회 역할이 너무 없거나 너무 회의가 자주 개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폐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통위 협의 결과에 오히려 이걸 분리를 해 가지고 민간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들고—시행 대책에다가—그다음에 이것 자체는 공무원들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민간 자문위원을 또 따로 두기로, 자문회의를 따로 두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들은 경청하는 그 시스템은 계속 가도록 돼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자문위원회를 또 별도로 두는 건가요? 저는 아주 실무적인 내용이어서 굳이, 실무단에서 해도 된다 이래서 공무원들로만 구성하는 줄 알았는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또 신설한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이도훈** 예, 원래 심의위원회 하에 행정분과위원회가 있었고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각각 민간위원 세 분, 민간위원 두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순 자문적인 성격일 뿐 아니라 거의 불참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잘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없애는 게 좋겠다 했는데 외통위에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별도로 민간위원회를 하나, 자문위원회를 두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하는 협의회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권철승 위원 협의회로 전환하는 것은 저도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가 조금 의문스럽네요.

○외교부제2차관 **이도훈** 간혹 하다가 보면 민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두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은 취지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철승 위원 좀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이자고 하는 논의가 정부 내에 계속 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이도훈** 예, 그렇습니다만……

○권철승 위원 있는데, 실제로 줄어드는 건 아니네요, 자문위원회가 하나 생겨서.

○외교부제2차관 **이도훈**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에 위원회가 두 개 있고 심의위원회가 협의회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조금 기능이 달라졌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팬찮습니까? 권철승 위원님 팬찮아요?

○권철승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의사일정 31항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남북협력기금법,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가 포함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김승원 위원 지금까지는 어떤어떤 분야가 주로……

○통일부차관 **김기웅** 이 취지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곳에는 지금 하려고 하는 환경,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다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기금법에는 문화·학술 이렇게만 있었던 것을 기금법에도 교류협력법에 죽 예시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예시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똑같이 쓰자라는 취지에서 기금법에 명시하는 겁니다.

○김승원 위원 남북협력기금법이 있고……

○통일부차관 **김기웅** 교류협력법이 있고요.

○김승원 위원 또 교류협력법이 있고.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교류협력법에는 분야가 다 명시가 돼 있었는데 기금법에는 몇 개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다 옮겨서 명확하게 좀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승원 위원** 같이 일치를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군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얼마 혹시 예산이 되어 있나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보통 저희들이 한 1조 3000 정도……

○**김승원 위원** 1조 3000?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김승원 위원** 남북협력기금도 마찬가지로 1조 3000억 예산에 다 들어 있는 거고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협력기금 자체가, 협력기금법이 그걸 운용하는 법이고요.

○**김승원 위원** 지금 그만한 예산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지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김승원 위원** 일치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별 이의는 없고요?

○**김승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서 법을 3개 개정을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별해서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은, 그런 상황에 대한 각종 제한은 차이가 없네요, 또? 그런데 마치 여기서 구분해서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법안을 보니까 단지 과거의 법률이 해석상 집행유예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걸 명확하게 한 것 외에는 기간에 어떤 차이가 있거나 발급에 제한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네요?

○**외교부제2차관 이도훈**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걸 갖다가 분명히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에 1년 이상 3년 이하 이런 식으로만 돼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상에서 2년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집행유예의 경우 1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형을 2년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개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분이 분명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사실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법에 위임 자체를, 위임 근

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거다?

○**외교부제2차관 이도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유예 부분에, 집행유예 부분이 안 들어가 있고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밝히고 그걸 가지고 시행령에 가서 두 가지를, 제한하는 기간을 둘로 나누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관련 규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시행령에서 실형의 경우에는 좀 더 기간을 넓게 하고 집행유예에는 좀 적게 하고.

○**외교부제2차관 이도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9항부터 제31항, 제33항, 제34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28항, 제3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훈 차관님, 김기웅 차관님, 석동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0)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3)

(11시36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0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0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3조제4항은 군인 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자에 대해 재해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5조는 제43조에 따른 고의·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해유족급여 지급 제한 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2조는 국방부장관이 재해보상급여 심사 시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은 현재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야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기군외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로 확대하고 전사자·순직자 등 추서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30조제4항은 전사자 및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및 예우를 높이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일반 공무원이나 소방관·경찰관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과 달리 군인의 경우에만 추서 진급에 맞춰 연금 등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역연금 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를 그 재직기간 중 퇴역연금 전부지급 정지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발의 및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

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 시 근로소득이 연금소득보다 적을 경우에 일부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정안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연금과 보수의 이중 수혜 방지를 위한 전액정지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고 공무원을 비롯한 다른 직역연금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 수행 범위에 군수품의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와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을 추가하고, 군·방위사업청 및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안전법령 등은 식품위생법 등 32개의 법률,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그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한 규정으로 정의되어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요건을 명확히 해석·특정하기 어려우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제40항, 2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신범철 국방부차관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안종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특히 의사일정 제37항 군인연금법 심사와 관련하여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37번, 군인연금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좀 신범철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반갑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처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왜 군인만 다른 공직자와 달리 이렇게 일반 선출직, 지방의회가 아닌 전체 일반 선출직의 경우에 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저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국방 위에서는 군인이라는 특수 직종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의한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너무 쉽게 그냥 다 주셔 가지고……

기재부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열한 분이 혜택을 받는 걸로……

○조정훈 위원 열한 분.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국회의원 다섯 분……

○조정훈 위원 국회의원 다섯 분.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지방자치단체장 두 분 해서 총 열한 분이신데요. 저희는 군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만……

○조정훈 위원 좀 크게……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저희는 군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주면 타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향후 진행되는 공적연금특위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2소위 말고 3소위 없나요?

(웃음소리)

최송합니다. 이건 뭐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소위로 회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똑같이 37항에 대해서 같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조정훈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3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권철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권철승 위원님.

○권철승 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고 싶은데, 37항인데요. 정부 내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신 거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돌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요?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신 거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협의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신중한 검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철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강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의사일정 36항에 대해서 좀 국방부차관님께 여쭙보겠는데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겠지만 전사자·순직자분들 중에 추서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의견을 좀 구해 보셨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순직이 1·2·3형이 있는데 그중에 1형하고 2형에만 해당하도록 이렇게 하면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최강욱 위원 1형·2형은 구체적으로……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러니까 순직한 것 중에……

○최강욱 위원 마스크 좀 벗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마스크 벗고요?

○최강욱 위원 예, 발음이……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순직 1형 같은 경우에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고요. 순직 2형은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최강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순직을 나눠서 하는 경우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같은 분들에게는 본래 없나요, 특별한 요건으로 좀 더 강화하는 것은?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방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강욱 위원 군인의 경우에만 특별한 것이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리고 순직 3형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과 관련 없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이러한 것은 했습니다.

○최강욱 위원 이게 개정안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추계 같은 것을 해 보시잖아요. 얼마나 더 소요될 것 같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순직 3형을 제외할 때 4명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저는 앞으로도 이게 다른 직역에도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게 좋은 사례가 돼 가지고 다들 공감하시고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35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동민 간사님께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서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항이 추가돼야지 이 법률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놔다가 저 법률 올라오는 것 보고 함께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 법은 지금 어디 있나요?

○전문위원 한석현 복지소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복지위 소위?

그러면 전체회의 계류……

○박형수 위원 예.

그다음 38항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군인 신분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인데 그때 민간인이 병역 판정검사를 받으려 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법리상 맞는 것인지 또는 이게 다른 법률과의 저촉 이런 부분은 없는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국방차관님, 혹시……

○병무청장 이기식 병무청……

○위원장 김도읍 병무청장님, 이게 혹시 국가배

상 일반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병무청장 이기식 지금 현재 병역법에는 입영할 때라든지 동원훈련 받으러 갈 때 부상당한 사람도 국가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병역 판정검사를든지 입영 판정검사를도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식별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요?

○박형수 위원 그렇게 되면 본인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보상을 해 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기재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재부하고는 의견 조율해 봤습니까?

○병무청장 이기식 예, 다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박형수 위원 조율 안 된 걸로 우리는 듣고 있는데 조율됐다고 말씀하시네.

○정점식 위원 아까 기재부에서 나오신 분.

○위원장 김도읍 황순관 국장님.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아니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부처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견 조율을 했어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국 예산이 아니고……

○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아니긴 한데……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국방예산과 소관, 그러니까 일반행정재정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일단 전문위원이 아직까지 인사혁신처하고 기재부 의견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의견 제시를 하니까……

○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께서는 언제 최종적으로 기재부 의견을 들었습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병역법에 대해서는 기재부로 부터 의견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받은 바가 없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를

할 때 기재부에서 이견이 없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병무청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국방차관님, 보증인입니까? 보증인으로 나선 겁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이 법률을 나중에 국방부에서 논의하는데 그때 기재부하고 협조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일단은……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38항에 대해서 국방예산과에서는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 방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방예산과장 명의로 기재부 의견이 왔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2소위 회부입니까?

○박형수 위원 예, 2소위에……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유상범 위원 저는 차관님께서 순직의 사안에 따라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 또 그에 준하는 경우에 순직 당시가 아닌 추서된 직급에 따라서 예우를 해 주는 것,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식의 희생이 군인만 있느냐? 제일 큰 게 소방공무원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집단으로 5명이 화재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 당시를 기준으로 예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생명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어도 국가 정책적으로 좀 정리가 돼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는 추서된 계급으로 간다는 방향이 정해져야지 군인만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당장 소방공무원도 그렇지만 경찰관도 똑같은 겁니다. 범인 검거하다가 어디 상해 입거나 또 순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체계의 정합성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의 방향에서 어느 하나만 먼저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과 한번 논의를 하셔서 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

장을 정하셔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2소위로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것만 넣고 나면 기본적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체계와는 너무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39번 법률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관련 법 제가 찾아왔거든요. 이 중에는 32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모든 법률에 위반됐을 때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이견 명확성이나 비례성의 원칙에 너무 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2소위에 회부해서 추가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신범철 차관님께, 37번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2소위에서 토론이 더 필요한 것은 명백해 보이는데요. 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법안이 발의된 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사례 자체는 지방의회의원의 보수가 낮아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합치가 됐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관련 상임위에서 애정이 너무 많이 담겨서 여러 가지로 논란을 일으킨 것 같은데 제2소위에 가서 만약에 이 법안을 다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으로 다시 복귀하면 동의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기재부도 동의하실 수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 위원님, 기재부는 지금 담당 국장님이 아니셔서요.

○조정훈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아니요, 이것은 저희 것 맞고요.

○위원장 김도읍 맞나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 가지고 인사처하고 관련 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다시 지방의회의원 보수로 한정해서?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2소위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황순관 국장님하고 관련 부처는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40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떤 취지로 개정하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표 시기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이 이렇게 규정한 취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동일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18 민주화운동만 관련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다른 법과의 법체계나 균형상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하고요.

두 번째는 미리 공표가 됐는데 만약에 조사 내용이 번복되거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달라진다면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요. 미리 공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실관계가 바뀔 우려가 없이 조사 절차가 거의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에 발표를 한다든지, 지금 무작정 보고 전에도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도록,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시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다른 법의 침해 우려가 없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2소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기동민 위원 40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관계자 나오셨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안종철 예, 부위원장 출석했습니다.

○기동민 위원 국방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토론됐습니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안종철 국방위 내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바로 거기에서 설훈 위원님이 제시한 것을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더불어서 공표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위원회의 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포함시켜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기동민 위원 지금까지 조사작업이 상당한 정

도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안종철 예, 한 7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거기에 대단히 국민적으로 소문도 무성했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조사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알권리 차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다 5·18 정신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과 행동까지 다 집행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체계·자구 심사 좀 더 해 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문제들까지 이렇게……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정신을 존중해서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좀 더 공론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힘들고 어렵게 토론 과정들을 거쳐서 올려 보내 주신 건데 이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정 힘들다면 2소위로 보내지 마시고 한 번 더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한 심정은 이런 문제에, 법률가들 입장에서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적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여야가 동의한 사안이어서 여기서 좀 확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몇 항 관련해서 말씀……

○유상범 위원 40항 관련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을 조금이라도 폄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셨듯이 조정훈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법체계상 또 우리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 상임위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이것도 저희가 법사위원으로서 항상 머릿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심히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모든 발표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를 비난합니다만 우리가 그중에서 수사 결과 완료된 것을 공표하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 있었던 일부 내용이 나오는 걸 비난했듯이 이 사안에서도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 즉 최종적인 결과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자의적 판단에서,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일부 과정에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 내용이 발표된다면 그건 사실은 최종적인 의견도 아니고 정리된 사실도 아닌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사, 어떤 수사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할 때는 확정된 최종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중간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한다든가 이것은 체계적으로도 안 맞고 법체계상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통념상도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 어떤 사회 체계나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용인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원칙론으로 고민을 해야지 이 사안, 5·18 정신에 대한 의심이나 그런 부분을, 마치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식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법체계에서 이걸 갑자기 이것만 예외를 둔다는 건 저는 이견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5·18 부위원장님,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국방위에서 주로 이 입법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어떤 부분이지요? 뭘 공개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가요, 중간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안종철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 아홉 분 위원님들께서 모든 부분을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홉 분 위원님들도 여야 국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도한 결정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3년 이상을 조사를 해

오고 있는데 사실 당시 참전했던 군인들의 제보 내지는 양심 선언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간중간의 상황들을 좀 약간 알리게 되면, 국민들이 좀 알게 되면 바로 그런 추가 제보라든지 양심 선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또 국회에 와서 저희들이 6개월마다 활동 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 자체가 거의 국민에게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의결로 충분히 갈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훈 의원님께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아니, 말씀 여쭙본 취지는,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자칫 잘못 들으면 이 중간에 위원회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한 다음에 사실 판단을 해서 완전히 최종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표를 하면 어떤 명예훼손 부분이라거나 향후에 사실관계를 놓고 다툼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안종철 예.

○최강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걸 추진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자가 지금 누구누구누구인데 당시에 이런 행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표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조사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위원회를 지금 진행하시다 보니 어떠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국민께 알려 가지고 조금 더 뭘 알리고 싶어서 한다는 거랄지, 위원회의 판단으로 적어도 이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안종철 단순한 하나의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법 개정이 될 때 북한군 침투설 이 부분이 우리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했던 지 모 씨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법에 의해서, 그분이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구속돼 있습니다. 구속돼 있음

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까지 계속 북한군 침투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리고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70%, 80% 조사를 마쳤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릴 수가 없게 됨에 따라서……

○**최강욱 위원** 일방적인 주장만 그냥 계속 공표가 되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안종철** 일방적인 주장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예방하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 가장 악질적인 어떤 비방이랄까 이렇게 북한군 침투설, 지령설 이런 것들인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안종철** 예,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최강욱 위원** 그 얘기들이 지금 소위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세력 일각에서 늘 존재하는 얘기잖아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안종철**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멀쩡한 사람들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명확히 있어 보이고, 그런 점들에 대한 예방 기능은 지금 이게 무슨 어떤 특정인에 대한 뭘 공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거야말로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정히 필요하시다면 위원회로부터 그간의 사안 진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설명들을 위원들한테 아까의 그런 사례처럼 그렇게 하셔서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면 될 일이지 이걸 소위까지 보내 가지고 다시 논의하고 하는 것은 괜히 법사위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걸 발목 잡는다는 불필요한 오해만 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과연 그냥 추상적으로 입법 목적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 과연 부합하는

지 오히려 더 의문이 들고요.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께서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렇게 위원님들의 선의에만 맡겨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지금 그것이 과연 순수하게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그다음에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어떤 내용이든 위원회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거나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저는 아까 시기에 대한 말씀만 드렸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도읍** 안종철 부위원장님, 원래 이 법을 제정을 할 때 34조 7항은 ‘조사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행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안종철** 예.

○**위원장 김도읍**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는 입법 취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입법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 안종철 부위원장님의 이 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 보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게 과연 애당초 우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이 제정될 때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취지와 이게 맞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법 전체, 이게 단 34조 7항 한 조의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을 만들 때의 입법권자들의 의도, 목적과…… 지금 개정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게 전형적인 체계 문제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가면 자구 수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차적으로 이 회의 결과를 보면 2소위로 가야 하지만……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 이 법 34조 7항이 공표를 금지하게 된 입법 취지가 된 지부터 해 가지고……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전문위원으로부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석현 예.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그렇게……

○기동민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아까 제가 계속 손을 들었는데 요. 저는 36항 여쭙보려고 들고 있었습시다.

짧게 여쭙보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추서 진급을 했으면 그에 맞는 연금도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걸림돌이 소방관·경찰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 지켜 주시는 분들인데 거기도 혹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관·경찰관에 대해서도?

○국방부차관 신범철 소방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형평성을 제기를 하시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통과가 되면 소급효가 혹시 있습니까? 기존에 받던 분들과 또 새로 받게 되는 분들 사이에……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금 현재 입법에서는 소급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소급효는 없고 향후의 순직자나 전사자분들만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좀 다른 문제인데요. 전직지원 교육 성과 평가할 때 국방부장관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성과 평가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금 저희가 전직교육을 할 때 전직교육 대상자들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직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전직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직이 되는 기관에서 어떻게 취업 성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제대 군인 중에 취업을 자발적으로는 신고를 잘 안 하시니까 그걸 갖다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또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승원 위원 개인정보 동의를 사전에 얻을 수는 없나요, 전직하기 전에?

○국방부차관 신범철 교육 과정에서요?

○김승원 위원 예.

○국방부차관 신범철 의무적으로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사전 동의를 얻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행정 목적을 위해서 강제하는 건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사전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아무래도 전직교육 대상자들이 제한되고 저희가 전직교육과 관련해서 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법률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항구적으로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기한 제한 없이?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글썄요. 좀 더 답변을 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법과 침해될, 상충될 염려는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동의를 얻어서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김승원 위원 아, 동의를 얻어서?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권철승 위원님.

○권철승 위원 39조 9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보면 국방기술품질원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충 내용이 이러거든요. 품질보증과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그다음에 군수품의 표준화에 대한 업무 지원 또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인데 개정안에 보면 시험을 추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에 있는 것과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업인데요.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 기자재가 필요할 것이고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험을 하게 되면. 그런데 국방부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다양할 텐데 그걸 직접 시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아마 예산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른 데서 기술적인 부분들의 데이터라든가 시험성적서라든가 등등 이런 걸 받아서 아마 운

영을 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직접 시험을 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또 기재부와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다 보신 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위원님, 방위사업청장입니다.

말씀하신 군수품의 품질보증과 품질경영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군수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분석·평가, 시험·연구 활동을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현재에도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신뢰성센터에 69명이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고자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이고.

추가적인 재원 소요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청장님,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이 해 오셨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법률상의 포괄적 개념과 그리고 국방부……

○권철승 위원 법률은 그렇게 보기가 좀 힘들어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법으로 보면 그런 직접 시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의 개정 취지가 법적 근거에 그런 부분들을 넣고자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거네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해 놓고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유상범 위원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해 주는 게 맞지만 순서가 안 맞네요, 확실히.

○권철승 위원 예, 이 순서는 안 맞네요.

향후에 시험과 관련된 사업을 더 추가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저희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에 대한 업무가 집중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것은 하여튼 순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36항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볼게요.

아까 제가 예산 추계 같은 것 여쭙했을 때 4명 정도가 해당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최강욱 위원 소급이 안 되는데 4명이 해당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법 시행 전부터 무슨 시행될 사람, 적용을 받을 분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연평균 전사나 순직자는 78명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추서 진급자는 한 6명 정도 평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강욱 위원 평균 그 정도 적용되실 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야말로 오늘 의결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른 소방관이나 경찰관분들에 비해서 군인분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식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저희가 보훈처 관련 법안에서 유족들이 연금 수급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입증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법률과 달리 수급권자인 유족들에게 입증 책임을 주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예외적이다라는 식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는 국가가 그런 의무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차원에서 통과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면, 향후 이게 선도 입법으로써 군인 부분에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경찰관, 소방관분들의 노고와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서 오늘 의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개별법에서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을 두게 되면 국가적으로 법체계의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부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차라리 이 부분을 정리해서 신속하게 보완하고 그 조항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개별 직역에 따른 차이 문제, 또 추진 과정에서 시간의 차이 문제, 또 다른 직역에서 또 다른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소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행정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수해 현장 지키러 나갔다가 사고 났어요. 이런 것 다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기본법으로 정리하는 체계상 또 전체 법체계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소위로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강욱 위원** 아니, 위원님, 특정직하고 일반직은 애초에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기본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이것은.

○**유상범 위원** 재해보상법이기에 때문에 가능하지요.

○**최강욱 위원** 아니지요. 어차피 개별법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도읍** 두 분 위원님,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의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40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차관님, 이기식 청장님, 엄동환 청장님, 안종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창섭 차관님, 행안위 끝났습니까?

행안위까지 법안 심사를 오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차관님하고 김수환 정보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후에 첫 심사 순서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국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 김수환** 예.

○**위원장 김도읍** 죄송합니다.

오전 회의는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6)

(15시00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 위원장님, 잠깐 여쭙볼 게 하나 있는데요. 의사 진행……

○**위원장 김도읍** 예? 의사 진행?

○**최강욱 위원** 관련해서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김도읍** 예.

○**최강욱 위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지금 행안위 때문에 차관님이 원래 못 오신다고 하다가, 저희 출석 명단에 보면 실장님이 명단에 올라와 있었는데 끝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청장님은 원래 대상인데 행안위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하고.

그런데 똑같은 행안위가 끝났는데 지금 국장님이 오시고 차장도 아니고, 뭔가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아니요, 저도 한창섭 차관님께서 행안위에 계시는 줄 알고 참석하셨기에 감사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최강욱 위원 그래서 당연히 일이 겹치시고 하면 주무 상임위에 가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마쳐서 이렇게 차관님이 오셨는데 못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공지가 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제가 차후 확인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국장님은 회의 끝나고 나서, 법안 심사 끝나고 나서 우리 행정실에 사유를 알려 드리고……

○최강욱 위원 정보국장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참, 정보국장님.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 김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하셨지요?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 김수환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 및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나 소규모 집회 등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의 옥외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 역시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

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김수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42항 집시법 일부개정안의 경우에 전문위원이 보고를 한 대로 지난 12월 22일 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두고 거기다가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도 보호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저를 다시 추가하는 규정을 넣고 일방적으로 전면 금지하게 되면 결국은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그런 법률을 저희가 또다시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결정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문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 위원 저는 행안위가 무슨 생각으로 이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쪽으로 올려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찰청에서 오신 정보국장님, 혹시 그때 논의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 김수환 저는 당시에 다른 국장을 맡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초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현재 결정은 12월 말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기존에 있는 대로 집무실과 사저를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이게 헌법불합치 판정도 그렇지만 세상에 이런 사고를 하는 게 우리 국회에서도 가능한지 정말 나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더 이상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2소위는 2소 위입니까, 그냥 폐기해 버리는 게 맞지.

○위원장 김도읍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유상범 위원님이나 기동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이 법은 위헌성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 법사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43번도 상정이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예, 돼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43번 법안에 대해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와 장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고 이 특례의 신설이나 변경을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신설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개정돼서 법사위로 오면 그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도읍 예, 지난번처럼.

○정점식 위원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이 오면 그때 함께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0)

4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2)

5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5)

5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16)

52. 영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7)

5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8)

5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5)

(15시07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56항까지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의사일정 제48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지난 전체회의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44항부터 47항까지, 49항부터 56항까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위반 선박에 대한 정선·승선·나포 등의 업무수행 시 사법경찰관에 대한 감사의 지휘 권한을 삭제하고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위반 선박의 나포 등의 조치는 해양법 협약에서 유래된 특유의 강제조치

로 수사권 폐지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배출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환경 피해나 어업권에 대한 피해가 과학적으로 분석된 상황이라고, 온배수 영향범위 내 어업권에 대한 보상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등 이미 금전적 보상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조성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비정보를 수집·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분석·관리를 통해 해양경비 활동을 지원하는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경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해양경비정보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상황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해양경찰 연구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2항 영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3항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은 '대차대조표'의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제53항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경우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법 조항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상법 개정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

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 제54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송상근 해수부차관님, 남성현 산림청장님,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장동혁 위원 44항 법안에 대해서, 그동안 농업이나 농촌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 법은 진일보한 것이고 입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필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기재부의 의견은 이 인센티브 사업과 합쳐서 다른 탄소중립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조금 더 확대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체제가 개편되기 전에 미리 인센티브 단가부터 인상시켜 놓으면 여러 가지 사업과의 체계가 문제가 되고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기재부도 이것보다 더 확대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재부와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현재 말씀하신 건 아마 탄소중립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다만 탄소중립 직불제의 도입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는데 그 인센티브가 지금도 톤당 1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단가를 특별히 인상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든 그 두 개 사업이 일관성을 갖고 가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2소위로 넘긴다기

보다는 전체회의에 두고 한 번 정도 이 사업의 체제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을 다시 들어 보든지 한 번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51항에 대해서, 해수부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장동혁 위원 51항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절히 지적된 것처럼, 저는 인과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온배수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나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저의 지역에는 보령과 서천에 화력발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법안에 관심이 있고 오히려 제가 적극 추진을 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업들을 금전적 보상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칫 전기요금 인상이나 또 이게 전기 수요자에 대해서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떤 법체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이것도 전체회의에 두고 산업통상부의 의견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거나 그 부분, 산업통상부가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산업통상부와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해수부 차원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서 수산자원 피해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이 상당히 인정되기 때문에 뭔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하고 좀 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 이런 체계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금전적 보상과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성금 부과라고 하는 이 금전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조금 한 번만 더 고민해 보고 산업통상부 의견도 한번 확인한 후에 이 법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해서 통과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두 건에 대해서는 전 전체회의에 일단 한번 계류해 두고 두 부처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송상근 차관님, 이렇게 조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다 저희들 화력발전소 지역하고요, 원자력발전소 지역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주로 서해 쪽이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의 기장,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있는 주변 해역은 그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원은 기재부 재원입니까, 아니면 발전소 재원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게 하면 발전소에서 톤당 얼마를 부과를 하고 그 부과된 것은 저희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회계에 들어 오고요. 또 만약에 지자체가 하게 된다면 지자체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여러 가지 자원조성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보다 설계가 정확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먼저 의사일정 50항, 53항 법안은 여기 보니까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황표로 이렇게 바꾸는 조항 변경 내용인데, 이게 상법을 인용하는데 상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고 2소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2소위에 내려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53항 말이지요?

○유상범 위원 50항, 53항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위원장 김도읍 50, 52……

○유상범 위원 52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꺼

번에 일괄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56항 해양경비법 관련 돼서, 해양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유상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기구 신설과 관련할 때 사전에 서로 좀 협의가 있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 당국 같은 경우는, 경비기술원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다른 법령에 좀 상충이 된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합상황실 즉 112지령실을 이용하면 되겠다는 의견인데, 지금 최초 상황을 접수하고 신고하고 초동조치 같은 경우는 상황실에서 가능한데 그 이외에 해상에서의 재난이라든지 예방 또는 외국적 선박들이 저희들 국경을 침범했을 때의 어떤 정보, 이런 어떤 사항에 관한 정보를 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은 제시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어서 예산 당국이 그로 인한 예산의 소요 또 설치기구의 활동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항이 많아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거 정리를 해서 가지고 법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국가기관 간에 중요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또 국고 지원이 되는 새로운 원을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면 좀 협의를 하고 법안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에 얘기를 해 가지고 다른 국가기관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안이 올라오면 결국 법사위에서 또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 간에 조율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앞으로 각 상임위별로 의원에게 입법 발의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법안이 올라오고 그러면 결국 국가적으로 소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2소위에 회부를 해서 기재부와 해양청이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중에 하나라도 꼭 필요하다면 그중에 하나를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도읍 56항이지요?

정점식 간사님이 대표발의하신 건데 과감하게……

○정점식 위원 양해를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못 봤습니다.

○박형수 위원 심하게 말씀하시네.

(웃음소리)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51항 관련해서 해수부차관님께 좀 여쭙 보겠는데요. 지금 산업부의 입장이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환경 피해나 어업권에 대한 피해가 과학적으로 분석된 상황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그래요? 이게 발전소 생긴 지가 언제고 온배수 피해 얘기 나온 지가 언제고 이게 소송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된 상황이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저희들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상황은 현재는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어느 부분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인과관계가 드러난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강욱 위원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조사연구를 어디 뭐 발주를 하셨다면서요? 언제부터 문제 의식을 갖고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지금 저희들 조사연구를 통해서 울진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km 범위 내에서 갯녹음 발생의 한 79% 정도의 영향을 주는……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조사를 하신 거냐고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시간은…… 발전소별로 피해가 발생하고 하면 군데군데 이렇게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면 처음 답변은 잘못 하신 말씀이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최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피해가 과학적으로 분석된 상황이 아니라고 해 놓고 두 번째는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온배수 영향 범위 내 어업권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분석도 안 됐는데 보상은 왜 해 준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처음에……

○최강욱 위원 들어설 적에 원래 다 평가해요,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절차적으로 이게 온배수 영향 범위 내의 어업권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이유가 온배수가 나가면 어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가가 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이고, 그런데 그게 향후에 추가 피해가 생기면 배상 범위에 들어가 가지고 소송이 생기거나 더 추가 확인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정부 간의 협의를 위해서 뭔가 의견을 내는 건 좋지만 과학적으로 분석된 상황이 아닌데 온배수 영향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한다, 이게 납득이 가나요? 해수부는 이걸 알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지금 해수부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희 예산으로 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강욱 위원 왜 그러시지요? 환경부 업무라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강욱 위원 이것 해 봐야 될 일 아닙니까, 어업권이 해수부 업무인데.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리고 지금 나와 계신 정부위원님들께 제가 공통적으로 여쭙보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가 법사위를 해 보면 꼭 무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한 게 전문적으로 등장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데가 기재부예요.

제가 정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을 알고 있는데 지금 입법 과정에서 번번이 이렇게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됐더라는 이유로 법사위에 와서 자꾸 발목이 잡히면,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왜 그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통과가 됐으며 그다음에 거기서 협의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이며 그다음에 ‘기재부가 주장하는 게 이런 점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점은 그냥 기재부가 특정한 면을 부각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정책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건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 관청이니까, 예산권 쥐고 있으니까 당신들 하는 것 우리가 브레이크 걸면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재부가 온 부처에 군림하는 상황이 돼요. 그런 부작용이나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기재부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지금 과연 이것이 기재부가 정말로 늘고민을 해서 하는 것인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종종 보이고, 그냥 기계적으로 와 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고 아니면 강제 조항으로 하게 되면 부담이 생기고 이런 얘기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명확하게 짚으시고, 그냥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기 와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정부 각 부처의 입장을 관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히 설득을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기재부, 어디 농식품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그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요, 그 부분은 일단 장동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최강욱 위원 예, 이 정도 수준이야 짚어 보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저희 소관사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중에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부분은 기재부와 이견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저도 동의를 한 거고요. 이견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최강욱 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제가 아까 50번에서 52번을 조문문구 정리이기 때문에 2소위로 보내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착각을 했네요. 원래 계속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상법 조문 개정안이 올라오면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유상범 위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행정부처에서 법안을 준비하실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조직의 확대가 되면 행안부고 예산이 되면 기재부예요. 법사위에서 기재부가 반대한다 해서 무조건 통과 안 되고, 찬성한다 그래서 무조건 통과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타위법을 심사하면서 보면 기재부가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법은 가야 된다는 설득 작업을 사실 전체회의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소위를 열어서 기재부와 해당 기관을 같이 논의를 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께서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정을 하셨다면, 이렇게 법사위까지 올라오게 만들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차관님들은 그런 반대가 있으나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설득력 있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말씀이 없이 이런 식으로 결국은 2소위로 회부되면 여러분 돌아가서 법사위는 법안의 무덤인 2소위로 회부한다고 법사위 평계만 될 것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관 간의 문제까지, 협력관계까지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같은 경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관님들 좀 더 준비하시고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기관 간의 협력, 그다음에 국가기관 간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다 당부 좀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51번 안건 관련해서……

○위원장 김도읍 51항이요?

○김승원 위원 예, 51항이요.

조성금 부과라고 하셨는데 조성금이 부과된다

면 대략 어느 정도로 부과되는지까지 혹시 예측이 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저희들 톤당 한 0.5원 정도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나오는 배출량이 한 710억t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 다 합하면 한 350억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규모 자체는 일단 저희들 내부 자료고 그런 부분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하고 또 충분히 협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최강욱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집단소송도 과거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소송의 결과가 혹시 나오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 부분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직은 검토해 보지 못하셨나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김승원 위원 결과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성금 부과되면 혹시 기존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폐지되지는 않을지 하는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저희들 만약에 수산자원조성금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 이 부분의 사용처가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예를 들면 온배수 수온 상승에 따라서 자원이 감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이구요. 나머지 발전소 주변의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발전이라든지 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가 분명하게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승원 위원 어민들에 대한 개인 피해보전은 아니고……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다숲 조성이라든지……

○김승원 위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아니면 공공 부분 쪽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오늘 최강욱 위원께서도 그렇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해양경찰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위원장 김도읍 예.

○김승원 위원 48항의 안전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위원장 김도읍 예? 48항이요?

○김승원 위원 죄송합니다. 49항이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경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긴급한 상황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해경청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제23조에 보면 저희들이 실무상으로 해상에서 외국적 선박을 검색하고 나포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은 수사 절차로서 따로 관할 지청이나 지검에 통보, 보고라든지 지휘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상에 지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개정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다만 검거하고 난 이후에 사건을 외국적 선박 같은 경우는 즉시 담보금을 부과하고 난 이후에 석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과금 예납에 준해서 담보금 관련해서는 검찰에다가 석방을 하겠다라고 벌과금 납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한 절차는 지휘를 받되 저희들이 일반적인 검문검색을 하고 나포하는 과정은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휘가 필요 없다, 그래서 법문을 개정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냥 약간 긴급한 행정명령, 행정행위에 가깝다 이런, 그 차원에서 개정하는 거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49항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는 의견 조율을 해 봤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법무부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해서 근본적인 어떤 틀 내에서 수사권 조정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검토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상이나 지청별로 볼 때는, 단위 검사나 단위 지청이나 단위 직원을 볼 때는 저희들이 수사활동의 영역의 내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사활동을 하는 것이지 사전에 검문검색하겠다, 나포하겠다 이런 지휘를 받

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을 통해서 통보로 갈음하고 나머지 담보금이라든지 벌과금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납 지휘라든지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상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법무부가 이걸 반대할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법무부의 논리는 이게 해양법협약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위원님,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것도 수사권 조정에……

○박형수 위원 일단 이견이 서로 조정이 된 건 아니네요? 법무부는 계속 그런 의견이네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저희들이 정말 해상에서 외국적 선박을 검거하고 나포하는 과정에서 신속히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수사권 조정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박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 가면 아까 누가 법안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2소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왜냐하면 법무부에서는 왜 이걸 반대하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수사지휘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면 개정을 하되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해양법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여기다가 녹여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2소위에 회부를 해서 법무부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위원 저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해경청장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보니 해경의 입장도 그렇고 법무부의 입장도 그렇고 이건 수사권 조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라는 부분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결론과 관련해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인데, 법무부가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권 조정하고 상관이 없으니 우리가 계속 지휘해야 되겠다 이렇게 논리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은 이것

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전혀……

○최강욱 위원 수사 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수사활동에 들어가는 거니까……

○최강욱 위원 사전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애초에 대상도 아니고, 현재 진행되는 실무를 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현실이 조문에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리고 아까 해수부차관님.

아까 뭔가 조사를 발전소별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최강욱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어디가 주관해서?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위원님, 제가 좀 수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해수부 차원에서의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저희 2016년부터 2017년간 한 3억 원을 들여서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울진 원자력발전소 갯녹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전체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일단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산업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더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산업부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고도 이러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물론 저희들은 산업부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산업부 나름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최강욱 위원 울진에다가 그렇게 조사를 해 보신 이유는 뭐예요, 울진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왜냐하면 금액이 한정되어 가지고, 3억 원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어떤 특정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고……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울진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좀 피해가 커 보인 다거나 아니면 제일 오래됐다거나 왜 선정하셨나고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울진에 있고 하니까 그 지역을 먼저 해서 시범적으로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 이 법안이 준비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특히 여러 가지 전기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관계부처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기요금 인상이나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이것은 그냥 문언상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번은 이게 서로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정부부처 간에 이런 논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근거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산업부가. 그래서 이것은 사전 협의 과정이나 사후 협의 과정이나를 통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공유하시고.

지금 정부기관 간에 동일한 사안이,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어느 게 더 좋은 길인가를 찾아 가는 것이지 자기 부처의 입장에서 내가 누구를 대변해서 누구 이익을 더 보호해 주느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저는 산업부가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잘 모르면서 지금 이러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잘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해경청장님, 49항 관련해서 법조문을 보니까요, 제23조제2항 관련하여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법조문에 23조가 뭘 규정하고 있냐 하면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이것이 사법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불과하기……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수사절차입니다.

○장동혁 위원 수사?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사법절차인데 수사절차가 아니라는 취지이신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아니, 수사절차입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데 그것 수사절차인데……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해상에서 외국적 불법 선박을 검색하고 나포하고 조치했을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지금 경찰……

○**유상범 위원** 그건 아닌데? 조치를 하였을 때 결과를 보고하되……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이러한 검색이나 조치 후에 조사를 거쳐서 벌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검찰의 담보금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지휘를 해서 담보금이 납부가 되면 석방을 하는 것이지 조치하고 나포했다라고까지 검찰에다 보고를,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경찰 책임 수사에.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님.

○**장동혁 위원** 어쨌든 청장님의 설명을 들어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걸 보니까 2소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오늘 농해수위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지적 또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최강욱 위원께서 한 두어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송상근 차관님, 각종 육상에서의 오물·폐기물 이런 것들이 결국 바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연근해에 있는 어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면 결국은 개별적 소송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리한 어떤 쟁송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되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순수하게 시간적, 법률적 지식,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어민들이 상당히 입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최강욱 위원 지적대로 근원적으로 해수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내지는 로드맵 정도를 갖고 어느 특정 지역 어민들이 어떤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는 기본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충분히 공감이 가지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마 그 작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울진은 하고 여기는 안 하고,

뭐 상황 생길 때마다 당사자에게 말기는 이런 거니까 윤석열 정부 해수부는 적어도 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 정도는 하나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다음 기회에 진행 정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말씀만 좀 끝내고.

우리 법사위가 항상 타 상임위 위원님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법사위 생활을 오래 해 보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 부처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이런 분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더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토론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때 기재부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좋은 귀결점을 찾으면 법사위에서 이런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기재부가 알지도 못하고 배제된 상태에서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법사위에 올라오면 관례적으로, 기재부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아,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재부도 기재부 입장, 해당 상임위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예산준칙·재정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큰 틀에서. 거기에 반한다, 예외를 두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곤욕을 치르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법사위원님들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같이 안고 가야 될 큰 문제 중의 하나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님들이라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법안 심사할 때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해경청장님, 49항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일선에서 일을 할 때 정선·송선·검색·나포, 이것은 검경 수사권과 관계없이 과거에도 선조치 후에 수사 기록과 함께 통보 내지는 보고되는 이런 형태 아니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일일이 서해에서 중국 어선하고 전쟁 치르면서 지휘받고 이런 건 과거에도 없었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거의 없습니다. 법문에 지휘를, 그래서 좀……

○위원장 김도읍 글썄, 제 경험에 의해도 이것은 없었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하다 보면 조금 정치하게, 과거에 사문화돼 있었더라도 이걸 없앨 때는 또 후속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법무부하고 조금…… 이것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도읍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해경에서 지휘받아서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사문화된 조문이기에는 한데 하여튼 이걸 하는 김에 정치하게 조문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우선 55번 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안 40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직무 부여를 하고 있고, 이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특사경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돼서 전체회의에 지금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걸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1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저는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찬성하겠지요. 사실은 온배수, 우리 통영의 경우에는 지금 안정에 가스발전소, 복합발전소가 건설이 되고 있고 고성에도 삼천포화력 그 부분에 계속 신규 발전소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이야기하기는 온배수 영향 범위 내 어업권에 대한 보상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영 가스기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소위 냉배수의 영향 범위 또 복합발전소의 온배수의 영향 범위에 관한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중간에 용역 결과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나온다 싶으면 용역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용역사를 또 선정해서 하고 이러면 지금 이 영향 분석하는 데 몇십 년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지금 소위 어선업의 경우에는 온배수나 냉배수의 영향과 아무 상관이 없다, 어선업은 어족 자원이 그 부근에서 고갈돼도 그 자원은 인근 바다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배들이 그쪽에 가서 잡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해서 발전소에서 어선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결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산업부 의견도 들어 보고 과연 그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산업부하고 협의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님, 54항 산림기술진흥법은 조문 수정이 돼 있지요, 검토보고에?

○전문위원 한석현 54항은 지금 원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원안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차관님, 48항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제가 문제 제기했는데 수정안을 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위원장 김도읍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제가 문제 제기했고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환경부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제46항, 제47항, 제54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제56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제50항부터 제53항까지, 제55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차관님 그다음 송상근 차관님, 남성현 산림청장님, 김종욱 해경청장님……

해경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직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서해의 위험한 상황에서 월선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하고 거의 전쟁 치르듯이 하는데 위로도 잘 해 주시고 조직 관리 잘 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고생하십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260)

5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1)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5시55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교육 범주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열거함으로써 그 외 평생교육 시설은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다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기관에 ‘평생교육기관, 대학’을 예시하는 방법으로 법문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에서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경비보조·지원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사업에서 재난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융자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 및 자금용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원 대상이고, 재단이 상환하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자금의 용도임을 법문에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난으로 인한 손실금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대학 자체 운영 기숙사 및 주변 식당 등 타 업종·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를 통한 피해보상 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에 학생 건강검진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김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상운 교육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심사와 관련하여 박금철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차관님, 지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성인 재직자에

대해서 진로개발 역량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장동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평생교육법을 바꾸어서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 교육을 평생교육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고용부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사실은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성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향상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저희들 이번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은 재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이 최근에 직업이나 이런 변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고자 할 때도 교육이 필요하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가목에, 제6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성인 진로교육이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고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규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개 지금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이 개념상으로 보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하는 것이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 놔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 규정에 포함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지요. 교육부에서 가져오실 건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가져온다기보다는 고용노동부는 그쪽의 진로교육법이나 직업훈련 차원의 법을 운영을 하면서……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그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도 하게 되고 교육부도 아마 경쟁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똑같은 대상자에 대해서 똑같은 부분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장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법조문으로만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여기에 다 그대로 포함된다는 거예요, 법조문의 개념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다만 그 기관이 서로 경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기관에서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다는 제7장에 성인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또 다른 법에 있는 그런 진로교육센터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장동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40조의3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제2조제1호와 제6호 이 부분만 신설을 하면 현행법에도 제16조제1항에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경비보조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40조의3을 신설하지 않으면 16조 1항이라는 기존 조문으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건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중복 조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성인 진로교육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법으로 인정한다기보다 워낙 필요한데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장을 만들어 가지고……

○**장동혁 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무슨 느낌표 하나 더 찍는 것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문을 다시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존 조문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면 그 지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좋습니다. 제2조제1호제6호 이렇게 새롭게 포함시켜서 지금 이 평생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제16조 1항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별도의 40조의3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16조 1항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사실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할 때도 40조의3을 만들면서 성인 진로교육 실시기관하고 그다음에 행·재정적 권한 지원 근거를 만들 때 16조 1항하고의 중복성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6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진흥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비를 보조할 거냐 지원할 거냐, 조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이고, 성인 진로교육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좀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행·재정적 권한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장동혁 위원** 어쨌든 이 법안은 2소위로 넘겨서 전체적인 법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차관님, 59항 학교보건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보이는 것은 비용 부담 문제가 혹시 협의가 잘 되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지금 저희가 국민건강검진 구조를 보면 영유아 단계하고 일반 성인 단계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가 있는데 학생만 학교의 장으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3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한 해에 한 410억 정도 검진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이 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건보공단이 이것을 하게 되면 건보공단의 재원 추가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학교에서 부담을 하되 업무만 위탁을 할 거냐 그 방식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에서도 지금 건보법 개정안도 있고 또 사업을 위탁하는 법안도 최근에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그쪽하고 조금 더 추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승원 위원 일단 건강보험공단 동의를 얻으신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아직은……

○김승원 위원 협의가 된 건 아니고?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협의가 끝난 건 아닙니다.

○김승원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관련된 논의라는 말씀이시고.

○교육부차관 장상윤 맞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학생을 명시하는 겁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이 법과 연계가 되는 거네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저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좀 더 기다렸다가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복지위 법안 논의하고 같이 맞춰서 최종 결론이 나와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러면 저희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58항 좀 여쭙볼게요.

행복기숙사라는 게 뭐예요, 고유명사 같은데?

○교육부차관 장상윤 행복기숙사는 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를 짓는 사업인데 재원은 공자기금이거나 공적인 기금에서 돈을 용자를 받아 가지고 기숙사를 짓고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를 받아서 용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걸 왜 사학진흥재단이 하게 됐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이것은 주로 기숙사를 지어야 될 사립대학이 저희가 80% 이상이고요. 국립은 사실 교육부가 직접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기숙사를 짓는다고 그래도 국비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서 사학진흥재단이 사학의 기숙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 사업 모델을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렇게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국장님 아세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201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예.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학이, 기숙사가 필요한 데를 사학진흥재단이 대신 해 준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런데 혜택은 어쨌든 학생들이기 때문에, 물론 사립대학이 스스로 자기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기숙사를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강욱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게 투자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사학진흥재단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제 걱정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또 이걸 지원해 주고 하다 보면 사립학교는 앞으로도 스스로 기숙사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사학진흥재단에다가 맡기면 되고? 지금 기재부는 그 걱정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예,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에 한 부분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최강욱 위원** 우려하는 바의 대표적인 거는 뭐예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한 손실의 개념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고요. 도대체 손실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손실이 또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최강욱 위원** 사실은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촉발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예, 그런데 이게 또 개념적으로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다 포함되고 그래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여러 가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강욱 위원** 일단 불확정 개념이다?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예.

○**최강욱 위원** 그다음에 국고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그리고 이게 정부의, 예를 들자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영업제한을 해 가지고 그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이랑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 지원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그 손실이 과연 정부의 조치로 인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조금 법적인 체계상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위원** 교육위 심사 과정에서는 의견을 그렇게 내신 적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저희가 서면으로 이 의견을 냈습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교육위 심사 과정에서도……

○**최강욱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이게 예를 들어서 기숙사 말고 다른 곳과의 형평성, 재난은 상관없이 오는 거니까요. 다만 이 법 취지가 기존에 코로나로—기숙사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코로나 기간에 집합금지나 기숙사 입주 제한이 이루어지고 학교도 파행을 겪으면서 누적된 손실이 한 24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는 비어 있으니까 기숙사비를 못 걷으니까 그 손실이 난 부분인데, 이 법이 된다고 그래도 이걸 소급적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때 피해를 입었지만 앞으로 그런 예측치 못한 재난이 왔을 때 원리금의

일부를 보전을 해 주자라는 건데 그냥 보전을 해 준다는 게 도덕적 해이가 올 가능성도 있어서 일부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숙사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가지고 손실이 난 부분을 보전을 하려면 기숙사비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간다, 그래서 그 피해를 온전히 손실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원리금의 일부라도 시행령에 일정 비율을 정하든지 해서 학생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걸 좀 줄여 주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최강욱 위원** 학생을 생각해 주시는 건 좋은데, 사립학교마다 행복기숙사가 다 있어요, 지금?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지 않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면 있는 곳의 학생들은 지원을 받고 다른 곳의 학생들은 또 그거하고 배제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의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일방적인 지원인 것 같아서요. 2소위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권철승 위원님.

○**권철승 위원** 권철승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손실금,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들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계산해서 손실금 보상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권철승 위원** 그런데 대학 기숙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대학 기숙사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가 방역 조치를 내리는데 정상적인 상황보다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 입주를 못했다는든지 또는 한 방에 한 명 정도 입주했다든지 했을 때……

○**권철승 위원** 회계 자료가 투명하게 있냐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것은 기숙사비 입주하는, 입주율을 가지고……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신고하고 그런 게 증빙이 다 있느냐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것은 사학, 이것을 SPC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자료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영업제한을 했거나 이런 데들만, 크게 보면 선택적으로 했는데요. 그리고 또 영업제한을 했더라도 규모에 따라서 안 해 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번에 코로나 때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규모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개념상 어느 정도 범위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지금 법조문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이기 때문에 감염병 재난 포함해서 자연·사회 재난이 다 포함됩니다.

○**권철승 위원** 기재부에서 오신 분께……

감당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못 보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재난으로 인한 구조…… 손실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불분명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손실이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대학에 학생들의 지원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선호가 기숙사보다는 밖에서 사는 걸 원해서, 기숙사 시설이 낡아서 안 들어가는 것인지 사실 손실의 원인이 또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조금 정의할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철승 위원** 혹시 보조금 같은 게 내려가는 게 있나요? 학교 사학에다가 보조금이 내려가고 그걸 받아서 이렇게 기숙사 운영비로 쓴다든가 이렇게도 합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게는 없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개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학진흥재단이 SPC를 설립해 가지고 기숙사를 짓고……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사적인 거네요. 사적 영역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권철승 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 않게 기숙사비를 조절해 가면서 계속 원리금을 갚

아 나가는 구조입니다.

○**권철승 위원** 유지가 안 되는 데도 있을 텐데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요를 봐 가지고 연합형이라고 그래서 학교 밖에 대학의 소속에 관계없이 받을 수도 있고 대학 부지 안에다가 지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해서 짓기 때문에……

○**권철승 위원** 현재로서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데는 없다는 뜻이네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지금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요. 다만 코로나 시기에 누적된 손실이 조금, 꽤 있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하고 의견을 조율해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2소위까지는 제가 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고……

○**위원장 김도읍** 글썽, 2소위 가야 조정이 되지 여기 매번 우리 박금철 국장이 올 수도 없고……

○**권철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기재부의 주장에 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조문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예, 보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재난에 대한 손실이라는, 재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셨는데 관련 규정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라고 해서 재난의 범위를 특정했거든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난의 개념이 불분명하다기보다는 재난으로 인한 손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인과관계, 보통은 정부의 어떤 조치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인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재난과 손실금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되는지 거기에 또 정부의 어떤 책임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손실이 꼭 재난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운영 과정상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불분명한데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예를 들면 운영하는 SPC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구분해서 지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따져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조 1호의 재난이라는 게 코로나와 같은 아주 1급 전염병의 재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난의 종류가 명확하고 그로 인한 어떤 손실의 부분도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규정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지원 대상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이잖아요. 사학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 발생한 손실금을 결국은 국가가 보전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예.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사학진흥재단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1조 5000억 원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발생한 손실이 약 300억인데, 아니 1조 5000억을 가진 재단에서 아주 예외적인 손실이 한 400억? 얼마라고 아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429억.

○**유상범 위원** 429억 났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그걸 근거로……

○**교육부차관 장상윤** 249억입니다.

○**유상범 위원** 249억인데 그걸 근거로 이런 지원 법안을 만든다, 저는 그 자체가 좀 약간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국가재정 지원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모든 국가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코로나로 인한 원인이 된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다 이런 식의 재난 지원을 국가로부터 요구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무리하다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2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교육위에서 이 법안 심사할 때 재원 관련해서 기재부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 했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측보다도 그때 기재부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도 저희가 올려놓고 논의를 했고요. 다만 교육위 위원님들은 이게 사학진흥재단으로, 민간으로 분류가 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 대상이 학생이고 또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위원장 김도읍** 아니 차관님, 대상이 학생이면 그러면 사학진흥재단에서 설립한 SPC가 이익이 남으면 국가에 좀 냅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날 때 그 이익 잉여금으로 놔뒀다가 손실이 날 때 본인들이 그걸 운영하면서 감당을 해야지, 이익 날 때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고……

자, 그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제58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또 박금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체위 소관 법률까지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6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8)

6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852)

6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5)

6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

6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5)

65.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54)

6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0)

6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73)

7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6)

7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766)

**7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

7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4)

7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6시21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79항까
지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검
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79항
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을 연
간 순매출의 0.35% 이상 0.5%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부담금 비율의
하한을 설정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
치유원이 설치하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개정안은 설치·운영 중인 지역센터의
소속, 지역센터에 근무 중인 인원의 고용 문제
정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개정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 양
성·배치에 관한 시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시책에는 은퇴선수의 생활체육지도자로써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
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지
도자의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
하고 있고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운영되
고 있어 개정안과 같은 별도 규정의 신설은 불필
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
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
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제9조제1항을 위
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계기관
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하는 의
무를 추가 규정한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은 정밀한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예술 활동 증명의 요건과 절차 등을 법률
사항으로 상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외 다양
한 기관에서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 중 하나인 ‘저작물이 있는
사람’을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등
취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
설하고,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게임
물과 인터넷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유
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효과 및 성능 등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
하면서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만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은 제외한다고 상술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만을 결합하여 얻는 게
임아이템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인 확
률형 아이템에 포함될 여지가 없으므로 문구를
정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69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
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탁 사업자가 환
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추가하며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
용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안 제30조제4항제4호와 같이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 본인을 별도로 규정할 실력이 없으므로
해당 호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웹툰의 정의를 신설하고 만화사업자 등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에 관한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권장 대상 등을 각 항에서 다르게 지칭하고 있어 만화사업자단체 및 작가단체를 포함하는 용어인 ‘관련 단체’로 통일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등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으로 대체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경과조치 등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개정안과 같이 별도 보증 신설 시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크고 향후 업종별 자체 보증 신설 요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콘텐츠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부 및 중재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부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조정 절차의 계속 중에도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사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기존 진행 중인 조정절차가 중단됨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시행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법에 유사 규정이 있어 중복 입법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관하여 사법상 분쟁을 법관이 아닌 제3자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 중재의 특성과 중재위원의

전문성 부족을 고려할 때 중재 제도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의 자율성, 조정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직권조정결정제도 또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유산지구 내 세계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토록 하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설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천연기념물·명승에 관한 내용을 이관하여 규율하는 제정안으로,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자연유산을 정의하고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 규정에 따라 경과조치를 정비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약칭한 용어를 통일하거나 조문번호를 정비하는 등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제75항, 이상 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제60항·62항·68항·74항·76항·78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김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님, 최웅천 문화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저는 63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이 지역센터가 정부 조직입니까? 전문위원이 이렇게 법률 규정이 되면 정부 조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어떤 조직을 상정하고 지금 이 법안을 이렇게 만드신 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지금 현행은 15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개는 사감위 직영이고 13개는 위탁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 발의의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질문 내용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장동혁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법에 보면 운영 주체를 시·도지사나 이렇게 장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직이나 기존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이 법의 그런 개정 과정에서 말씀처럼 지역센터의 직원들의 소속 변경 문제라든지 사무 위임·승계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 여부 이런 문제들이 소위 통과 이후에 조금 쟁점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부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위원 아니, 법에 담지 않고, 그냥 법은 통과시켜 놓고 지금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그런……

○장동혁 위원 어쨌든 차관님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 됐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행안부나 기재부나 농림부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이견을 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로 넘겨서 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아, 조정훈 위원님 먼저.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전 차관님, 64번 질문 먼저 드릴게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보니까 은퇴선수들 생활체육으로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인데 기재부가 반대를 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반대 이유가 돈과 관련된 거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형식으로 규정하든지 예산 부분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규정이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아, 생활체육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진흥법에도 이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예산의 추가가 없는데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저도 좀 그런……

○조정훈 위원 아니, 기재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권철승 위원 이 새로운 규정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업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정훈 위원 예, 저도 충분히.

기재부가 반대하는 걸 저는 살짝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재부 내용은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여기서……

○조정훈 위원 아니, 기재부가 반대한 이유가 이렇게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예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암시 아닐까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지금 운영되는 게 약 생활체육지도자…… 지방체육회에 배정이 돼 있는 2800여 명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5 대 5, 50%씩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생활체육지도자 규정을 생활체육법에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바라는 것은 생활체육 진흥에 근간이 되는 지도자 양성 정책 추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법적 안정성 알겠는데 실은 은퇴 선수들을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아주 솔직하게 민간이 돈 내든지 국가가 지원하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이분들이 은퇴한 뒤에 1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고 저도 이분들

지원해야 되는 취지에는 동의가 되는데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활용하는 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라는 인식이 되는데, 맞지요? 맞잖아요. 솔직히,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산 당국에서는 그런 취지, 뉘앙스로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 부 판단은 현행 그대로……

○조정훈 위원 기재부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차관님. 여기 기재부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상임위에서도 반대했었지요? 해당 상임위 논의하실 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그 이후에……

○조정훈 위원 그 이후에 왔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적극적으로 반대까지는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반대 의견은 법사위 와서 온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차관님, 이게 저희가 월권을 하지 않고 싶어도 이렇게 부처에서 이견이 오는 게 오늘따라 굉장히 많았고요. 앞서 회의가 길어진 이유도 다 이것 때문이었는데 운이 나쁘셨는지 실질적으로 안 좋았든지 계속 기재부가 반대하는 법안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좀 조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좀 더 관계 부처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뭐 취지가 크게 나쁜 건 없고 체계·자구도 문제점이 없으니 제 개인적인 제안은 2소위보다는 본 회의에 계류시켜서 기재부의 이견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우선 문체부차관님, 안건 74번인데요. 이게 대중 골프장 관련해서 예전에 예치금, 대중 골프장을 병설하게 하거나 병설 못 하면 예치금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삭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예치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기존의 예치금은 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해서, 예치금 조성비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비 법인으로 해서 4개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적으로 예치된 금액은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예전에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원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추가로 9홀을 하게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못 만들면 예치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치금으로 홀당 5억씩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 예치금이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아닙니다.

○김승원 위원 저는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그 예치금으로 조성한 골프장이 남겨주려져 그다음에 파주컨트리클럽, 한울, 퍼블릭개발 해서 700억에서 231억 규모씩 투입을 해서 조성을 했고 이 부분은 다 조성 법인, 조성비 부담 주체에게 이렇게 돌아간 그런 현황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그 예치금으로 대중골프장을 만들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그 대중 골프장의 소유권을 예치금을 낸 사업자한테 돌려준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돌려주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래서 예치금 남는 것도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부담금으로 조성을 해서 만들어서, 그거는 원래의 조성비를 부담한 주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승원 위원 어쨌든 간에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앞으로 골프장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그런 법안이라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 병설 의무는 한시적으로 94년부터 99년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이 항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승원 위원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김승원 위원 77번, 78번 이게 한 세트인 법안 같고요, 79번이 한 세트인 법안 같은데.

○문화재청장 최응천 세계유산은 77번이고요. 78, 79 쪽은 자연유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승원 위원 77, 78이 법 정비, 법률 체계 정비를 위해서 두 법안을, 법률안을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79번은 자연유산에 관련된 것이고.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77에 대해서, 지금 이게 김포 장릉 사건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것 같은데……

○문화재청장 최응천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유네스코에 여러 가지 저희의 규정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게 다른 나라도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발의를 해서 여기에 맞춘 거지만 사실은 장릉에 대한 문제도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장릉 사건 때문에 이게 그때 굉장히 언론 보도가 많이 됐고 그래서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영향평가 때문에 이제 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거잖아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강화한……

○김승원 위원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작성하는 영향평가서, 그다음에 문화재청 산하의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도록 해서.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김승원 위원 그런데 저희 걱정은 지금 세계문화유산이 물론 외지 쪽이라 할까요 약간 비개발된 곳에도 있지만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곳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대도시에도 있는데.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지금도 문화재보존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굉장히 많은 규제

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래서 위원님, 그것을……

○김승원 위원 거기의 주민들이 수십 년간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지자체와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셨나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공청회보다는 이 역사……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이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은 아시다시피 시내라든가 역사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미리 만든, 그 법률이 적용이 되는 구역이 있고, 조선왕릉 47기 구역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라는 이런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맞춘 건데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이렇게 같이 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걸 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시·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이런 규제와 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른 협약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1분만……

○위원장 김도읍 예, 1분 더 드리세요.

○김승원 위원 저희 수원특례시에든 수원화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지자체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고, 당연히 주민들에 대한 불편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 봐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저희가……

○김승원 위원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서면으로 입증 자료와 함께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사실 77·78·79번은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지대해서 제 의견은 이게 법안2소위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78·79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78·79항은……

○문화재청장 최응천 자연유산법……

○김승원 위원 77 그다음에 78·79.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러니까 77은 지금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청장 최응천 세계유산영향평가고요.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78·79도 사실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고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러니까 질의는 하는데 조금 전에 수원과 관련한, 그래서 제가 1분을 특별히 더 드렸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연 유산원을 설립하는 그것에 대해……

○김승원 위원 아, 예.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위원장 김도읍 예, 78·79는 그것 연계된……

○김승원 위원 77은 따로 있고 78·79가 세트 법률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그 세 가지를 법안2소위로 넘겨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일단, 예.

○유상범 위원 아니, ‘의문점을 갖고 있으니 2소위’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정훈 위원 추가질의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추가질의해 가지고 해야지……

○위원장 김도읍 추가질의하십시오. 대체토론은 얼마든지……

권철승 위원님.

○권철승 위원 권철승입니다.

차관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에만 봐도 64번 의안, 65번·71번·73번·79번 전부 다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다 있어요. 아주 명백한 반대 의견이 달려 있어요. 64번은 기재부, 65번은 공정위, 71번은 행안부, 73번은 방통위, 79번은 기재부, 반대 의견이 다 써져 있거든요. 아직 해소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79번은 찬성으로 돼 있어요.

○권철승 위원 아니, 그것도 기재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가능하다고……

○정점식 위원 79는 아마 기능 조정을 통해 가지고 약간 서로……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 확인

은, 확정 안 봤잖아요, 아직. 지금 설명만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본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도읍 그것은 조건부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위에 4개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가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싸워도 밖에 나오면 보통 원 보이스를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주무 부처가 드롭을 하든지 아니면 기재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최종안을 서로 만들든지 하는 게 상례인데 이것은 지금 서로가 그러면 반대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간 건가요, 아니면 협의 자체를 이렇게 문건만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그냥 끝내고 국회로 가자 이렇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위원님, 여러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65번 같은 경우는 공정위 관련 사항인데 원안에는 반대를 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다시 대안을 이렇게 해서 다시 논의를 했고 그래서 반대한 그런 경우라서……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반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의견이 안 맞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런데 급히 또 안건을 돌리면서 의견 물었을 때 구두로 하거나 또 그때는 조금 발견하지 못했는데 상임위를 통과한 후에 의견이 나온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권철승 위원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그것은 정부가 실력 없다는 소리밖에 안 들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지난 정부도 그랬어요.

○권철승 위원 이것 사전에……

위원장님, 제가 이 정부 저 정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것 처리 못 해요. 아니, 이렇게 해서 들고…… 아니, 정부가 입장을 다 정리, 조율해서 와 가지고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도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제기할 게 많은데 부처 내에서 지금 부처끼리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들고 와 가지고 이 법을 해 달라, 저 법을 해 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논의한다는 자체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문서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협의회 하는 회의체에서 이런 내용들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64번 같은 경우에 그냥 문건만 왔다 갔다 한 건가요?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왜 조율이 안 돼요? 불필요하다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했구먼요, 기재부가.

아니, 고개를 끄덕거리실 게 아니고 경위를 설명을 하셔야지요. 정부가 내부에서 지금 의견을 다 다르게 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제출해 놓고, 정부 위원으로 와서 정부의 통일된 이야기를 지금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정리된 이야기를,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정리해서 왔다’, 오늘 오전에라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왔다’ 뭐 그런 걸 들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권철승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금 전에 권철승 위원님 지적하신 항이 몇 항, 몇 항이십니까?

○권철승 위원 64·65·71·73이요.

○위원장 김도읍 64·65·71·73……

○유상범 위원 다 2소위로 그러면 회부를 하는 걸로 정하시지요. 추가 관련돼서……

○조정훈 위원 저 관련해서……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정점식 위원 71은 별 이견이 없는데 72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권철승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좀 찾아보시고.

위원님들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오늘 저희들이 문체위·환노위·과방위·산중위·복지위 이렇게 지금 죽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들께서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권철승 위원 71입니다. 아, 72도 있네, 72도 있습니다. 72도 추가로……

○위원장 김도읍 될 수 있으면 오늘 6시까지 법들을 가부간에 좀 심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면, 똑같은 의견이 계시면 조금…… 해 주면, 공무원들께서 지금 많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상범 위원 2분만 그러면 딱 쓰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나도 할 거 있어요.

○유상범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유상범 위원 62번 법안 보면 지금 장애인 예술인 공연·전시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의무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유상범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어떤 장애인 예술활동단체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그게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 조회는 한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법이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논쟁이 됐었고. 그래서 주기적이라는 의미 때문에 주요 국공립 예술단체들, 그래서 대학로예술극장, 예술의전당,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세종문화회관, 경기아트센터 이런…… 한 열 군데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지역까지, 전 지역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유상범 위원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되면 특정 장애인 예술인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취지는 좋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지역이 이런 활동이 전혀 없는 데도 자치단체에 의무가 부과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법규정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권철승 위원님 반복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65항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조사해서 요청만 하면 상대방이 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해당 기관에 강요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법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지금 권철승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2소위에, 지적하신 부분 대부분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2소위로 회부하는 것으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69항, 지금 소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간 체육 교류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인데 이게 지금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서 남북 간 체육 교류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굳이 왜 이렇게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기본적으로 만약에 각 부처에서 예산에 또는 기금에 남북 교류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으면 긴급적으로 통일부와 협의해서 통일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체육 부분은 그간에 어떤 남북 교류의 주요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넣는 그런 측면으로 그렇게……

○정점식 위원 그러면 통일부와는 별도로, 체육 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이 체육진흥기금을 써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남북 협력 문제는 통일부가 주관이 돼서 보통 이렇게 정부 내의 의견을 모으고 기금사업을 아우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을 기금으로 할 것인지 각 부처 예산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보통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통일부가 반대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통일부가……

○정점식 위원 참……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이 부분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가 아니고 남북 간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에 따른 남북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정해 달라 이런 취지로 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게 반대 아닙니까?

○정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는 불필요하다, 다만 꼭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달라…… 아니, 정말 간단한 문제를 왜 부처 간에 제대로 협의도 안 한 채 이렇게 그냥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버리고 법사위로 던지냐 하는 거지요. 이것은 거의 던져진 거거든요. 정말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만하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것도…… 아까 더 하실 게 없었나?

○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들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참, 아까 78, 79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님……

○위원장 김도읍 그것은……

○유상범 위원 취소.

○정점식 위원 아, 아닙니다.

○김승원 위원 2소위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런데 왜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 안 하시니, 토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의심이 가니까 나 2소위……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김승원 위원 제가 6분을 썼는데 그 앞에 하다가…… 지금 발언을 할까요?

○위원장 김도읍 권철승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오늘 타위법 해 보셨지요? 집중적으로 좀 해 봤는데, 제가 19대·20대·21대 지금 이래 가지고 2년 빼고 법사위를 하고 있습니다. 12년간 경험한 게 이겁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사위가 참 타 상임위 위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저희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요. 많이 받는데 타위법을 해 보면 이게 현실입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휴식 없이 6시까지 가신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도읍 예?

○조정훈 위원 휴식 없이 6시까지 가신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래도 환기도 하고 조금……

○조정훈 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6시일 텐데……

○위원장 김도읍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68항, 제74항·76항·7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제66항·67항·75항·7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63항·64항·65항·69항·71항·72항·73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7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극 차관님, 최웅천 문화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기동민 위원 아니, 한 시간밖에 안 남아서 문 열고 그냥 하고 그러면……

○유상범 위원 화장실만 잠깐 다녀올게요, 5분만.

○위원장 김도읍 아니, 환기 조금 시키고,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하니까 정회하였다가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

81.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4)

8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8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8항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정하고 민간 숙련기술자 단체가 기술 전수·체험 등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관련 개정안의 심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행정감독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이 행정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 객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신설하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 의무가 제외되는 경우인 무인정보단말기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음식물을 주문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문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대신 부지를 분양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우선 개정안 제5조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의 기산점인 준공일을 산업단지는 준공인가일, 공장은 사용승인일로 규정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준공을 완료한 산업단지나 공장의 경우에도 개정 규정에 따라 부지 매수 청구나 분양 요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환경부와의 협의에 따라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토록 하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종전 업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화학물질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 지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항은 지침에서 규정할 예정이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 중 일부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의 기능과 관리원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보험 또는 계약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보장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두 요건 모두 보험 가입 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1개의 위반행위가 두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중복 처벌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의 실제적 의무조항과 관련성이 높은 벌칙

은 과태료 조항이며, 현행 벌칙 체계에 대한 사업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 제17조제1항제2호 중 신설되는 범죄구성요건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제82항·제83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김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님, 권기섭 고용노동부차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저는 의사일정 81항과 86항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르지 않고는 특례를 정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용료 감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률안이 올라오면 그 법률안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재위의 이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체 회의에 계류시켰다가 다른 법안과 같이 처리하면서 부처의 이견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절히 지적을 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의무를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의무자가 하지 않으면 국가에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의 원인자 책임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의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러한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기재부와 산자부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소위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환경부는 역시 모든 법이 규제네요, 그렇지요?

80항, 83항, 84항, 85항, 88항, 제가 쪽 간단히 검토해도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80항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민감정보의 유출 문제, 정보 보호 문제도 여러 가지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그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이라서……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입니다.

80항은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한 내용으로 지금 법사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조율하신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조율해서 등록자료 중에서 체류자격하고 체류기간만 저희가 정보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상범 위원**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그렇게 정리됐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83항·84항, 이 부분은 보니까 모두 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와 이견이 굉장히 많네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지금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되어 되었습니다, 위원님.

처음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데 환노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해소를 해서 지금은 지자체 이견이 완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유상범 위원** 저희한테 올라온 내용으로는 전혀 해소가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데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를 들어서 악취방지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 개정안은 6조 7항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께서 지정 관리를 안 하고 있을 때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면 시·도지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처음에 발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지자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한 식의 개정은 원래대로 하던 방식, 원래 있던 6조 7항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없고, 대신 8항을 신설해서 환경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해서 보니 관리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파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하면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라라는 식으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처음 6조 7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6조 7항을 원래 현행대로 그대로 두고 8조만 신설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지자체장에게 수시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그건 소음·진동 방지법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예, 83항.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83항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아까 두 가지 안전을 다 말씀 주셔서 제가, 소음·진동 말씀드린 것이고요.

○**유상범 위원** 83항은 지금 각 자치단체장에 소음 수시점검 의무를 부과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지금 아시다시피 특별히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이 굉장히 심각하고……

○**유상범 위원** 의무 불이행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자체장에게 무슨 일정한 제재를 가합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지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은 없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의무를 부과하면서 거기에 제재 수단이 없다면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규정 형식에 전혀 맞지가 않지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의무를 부과할 때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어떤 제재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걸 전체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런 규제는 없고 수시점검 의무만 부과하고 그러면 선언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규정을 왜 만드시지요?

그리고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84항은 이견이 조정됐다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83항은 체계 자체가 일반 법체계 규정에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2소위에서……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예.

○**유상범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좋겠고.

84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지자체와 이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견이 해소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견이 해소된 것이 법안을 발의할 그 당시에 이견이 해소된 겁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발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안은 소위에서 심의할 때 이미 이견 조정이 된 겁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환노위에서 심의하면서 정리를 해서 7항을 유지하고 8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 83항은?

○**유상범 위원** 2소위 회부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80항은 법무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 이견이 없으시고요?

○**유상범 위원** 예,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87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차관님!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박형수 위원**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지금 신설한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가 담당하고 있었나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화학물질관리협회가, 민간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을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서 거기에다가 맡기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기재부는 지금 반대하는 취지가 일단 기재부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예산도 들고 그렇고 하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일 텐데, 이 기능을 지금 한국환경공단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라는 것을 새로 설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기재부하고는 협의를 해 봤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제가 담당 국장하고도 협

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러한 요지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 보십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박형수 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네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일단 한국환경공단이 규정상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사실상 한국환경공단은 환경기초시설 중의 하나인 공공하수처리시설들 또 폐기물처리시설들에 대한 관리, 각종 소음·진동·악취 문제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환경 관리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요.

그중에 화학물질과 관련한 실험실을 운영한다든지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일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환경관리공단은 화학물질 관리의 핵심 기관이 아니고 화학물질관리협회 또 기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그다음에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적인 평가와 연구는 또 국립환경과학원—이것은 국가기관입니다—그렇게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차관님은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 신설되면 이 기관에서 수행할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인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원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저도 다른 기존 기관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이 부분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십시다.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탄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탄희 위원** 의사일정 87항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금 박형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차관님 기재부하고 협의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부차관 유제철** 저는 그래서 지금 좀 더 협의를 하고, 아니면 꼭 관리원이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셨듯이 그중에 일부 다른 방식을 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기재부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이탄희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이 관리원 관련된 내용 외에도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이번에 좀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는 것은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걸 환경부가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전체회의 계류를 검토해 주시면, 환경부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저희 법사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전체회의까지만 한번 계류시켜 주시는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 제기했던 83항·85항에 대해서 질의를 못 했습니다. 추가 질문 시간을 주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예, 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환경부차관님, 8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보는데,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기준에 색상·무게 기준 항목을 규정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유상범 위원** 모든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포장재를 쓰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포장재의 두께나 색상·무게 비율을 어떻게 규제를 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환노위 과정에서도 같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관련 제품협회에서도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께 관리에 대해서는 법률안에서 삭제하고 실질적으로는 무게 기준만 우리가 더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법이 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왜 이 규정을 만드셨어요?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현재 포장재에 대해서 재질·구조 기준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급적 과대 포장을 방지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유상범 위원**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게 기준까지 지금 국가가 정합니까? 전형적인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행태 아닙니까?

아니, 과대 포장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계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지금 재질·구조까지 하고 무게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기업체에서 그 모든 요건에 맞춰서 새롭게 포장재를 구해야 되고 하는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위 법령에서 정할 사안인데 관련 협회들하고, 지난 환노위에서 회의할 때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하위 규정에서 가능한 부분은 어디까지 있을 것이냐 그런 논의를, 절차를 하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행태의 입법은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관련 업계와 이 부분을 논의하신다고 하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다음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글썄, 국가가 이렇게 많은 기업의 활동에 관여하고 단순히 과대 포장을 방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아주 세세한 것까지 관여하기 시작하면 과연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지나친 규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88항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산업부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이견이 있네요, 환경책임보험 약관과 관련 돼서. 이견 의견 조율이 안 됐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이 부분은 기재부와 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한 의견만 있고요. 산업부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산업부에서 보험 약관에 규정된 제출사항 및 계약변경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 결정사항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처음 발의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발의안에 대한 의견이고, 환노위에서 심의할 때…… 환경책임보험이 사인 간의 보험이 아니고 공적 보험입니다. 환경오염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공적 보험이라서 사실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정보는 제공되어야지만 적절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됐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벌칙을 말이에요. 47조 1항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보장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벌칙을,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유상범 위원** 벌칙을 상향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적 보험이고 어쩌면 피해가 주민들한테, 불특정 다수인한테 갈 수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조금 상향을 해서……

그리고 다른 유사한 관련 보험법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의무보험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2년, 2000만 원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같이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이……

○**유상범 위원** 환경책임보험은 누가 가입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배출시설 업자들……

○**환경부차관 유제철** 특정대기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처리시설들, 화학물질시설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들어도 이게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때 이 상향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가벌성이 더 크다든지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환

경부에서 보니까 통계학상으로는 이런 위반행위가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이것 좀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벌칙을 강화한다는 것은 가벌성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논리적인…… 관념적 사고방식으로 높인다, 이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되는 법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소위 말해서 성폭력 사건이 문제가 돼 가지고 중하게 처벌해야 된든지 그런 논리가, 근거가 있으면 형을 가중하거나 하는데 그런 근거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이것은 2소위로 한번 보내서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그러면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항목마다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83번하고 88번 이것은 2소위로 회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88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조정훈 위원** 저는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의 과잉입법 방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사람을 죽이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규제는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과태료 부과 대상, 벌금 대상을 올리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의 기회를 우리가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 기존의 법률로 부족함이 있다는 게 입증될 수 있습니까? 이 업체들이 환경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서 ‘이까짓 거 벌금 내고 말지’ 이래 버리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많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미가입 사업장들이 있어서 행정처분이 172건 있었고요 또 벌칙에 따른 고발도 117건 있었고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저도 유상범 위원님 존중합니다만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리라고 저도 믿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이렇게 과태료의 효과가 너무 낮아서

이익을 계산하는 업체들이 차라리 내고 말지 할 때 과태료를 조금 더 올려서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부과하는 것은 공적 책임보험을 운영하는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또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필요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2소위보다는 본 회의에 계류해서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해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보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더 활개 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동의하신다면 2소위보다는 본 회의 계류가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제철 차관님!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위원장 김도읍 1개의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가 있고 징역형도, 그러니까 형사벌을 하면서 징역형도 선택할 수 있고 벌금도 선택할 수가 있고 이렇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것은 형사법체계에 좀 안 맞습니다. 보통 과태료면 과태료, 형사벌이면 형사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국민들께 끼치는 피해가 많다 그러면 과태료의 선택권을 아예 빼든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형사벌 또 행정벌, 행정벌을 택할 것이냐 형사벌을 택할 것이냐, 형사벌을 택하더라도 중하게 처리할 것 같으면 징역형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할 게 아니라 병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팩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세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지금 행정벌 과태료와 징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고……

○위원장 김도읍 아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을 전문위원회서 수정을 해서 하나를 제외했습니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행위가 두 가지에 걸쳐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이고요, 좀 더 중한 사항은 벌칙인데 기존의 1년 1000만 원이 2년 200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이 하나 있고, 다시 그 전에 있었던 1년과 1000만 원에 대해서 보장계약이나 책임계약에 대한 변경이나 변경 허가를 적합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신설된 것뿐이지 이게 중복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요.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환경부차관님,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 거쳐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의원입법 하실 때는 규제개혁위원회 없이……

○최강욱 위원 안 거치지요? 정부입법만 가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최강욱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규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정부입법이 잘 안 되고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최근에는 의원입법이 훨씬 많은 추세가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 어디나 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때 환경부가 더 많다고 느끼시나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딱히 저희가 더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번에 자원의 재활용법도 정부입법입니다.

○최강욱 위원 사실 좀 걱정이 돼서 저희가 월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여쭙보는 건데 방금 전에도 문화체육부 법안 심사를 하다가 부처 간 협의가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환경부도 비슷한 상황들이 몇 개 눈에 많이 띄는데.

공직생활을 계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렇게 의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니까 의원입법으로 얘기합니다. 의원입법의 경우에 법안이 발의돼서 환경부가 생각할 때도 이게 추진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타 부처의 이견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관계 부처에다가 자동적으로 의견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의원입법도 의견 조회는 하지요.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그래 가지

고 의견이 오잖아요. 거기에 이견이 발견되면 담당 국·과장 책임하에 관계 부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회의해 가지고 최대한 이견을 해소해서 저희가 환노위에서도 처리를 하지 않겠나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렇게 해서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협의가 계속 안 되거나 이러면 국조실로 올라가거나 옛날 같으면 청와대로 가거나 그렇게도 하지요, 조정이나 협의를 위해서?

○환경부차관 유제철 협의가 교착이 되면 그러기도 합니다.

○최강욱 위원 교착됐을 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최강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또 상임위 심사 통과해서 법사위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각 부처에서 계속 이견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느냐고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막혔다고 보시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지금 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최강욱 위원 아까 다 초반에 나온 얘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환경부차관 유제철 소음·진동, 악취 방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87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만 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해서……

○최강욱 위원 겹칩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아직 기재부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최강욱 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무슨……

○환경부차관 유제철 다른 조항들은 부처와의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86항 폐촉법은 이견이 있었는데 해소가 가능해서 지금 다 검토가 가능하고……

○최강욱 위원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지금 81항 그다음에 86항, 87항……

○환경부차관 유제철 위원님, 저희 환경부 법은 86항과 87항입니다.

○최강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계속 이견이 올

라오는 게 정리된 건데 그냥 여기 잘못 적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6항은 이견이 있으나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고 그 대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왜 사전에 정리가 안 됐는지를 여쭙보잖아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이것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순수하게.

○최강욱 위원 그러면 부처 간 협의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하면 됩니다.

○최강욱 위원 앞으로 하면 돼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아니요, 했는데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여기 의사일정 검토의견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정안까지 만들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86항은……

○최강욱 위원 이견 별문제가 없는 거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전체회의에 좀 보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부처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87항 하나만 기재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최강욱 위원 81항의 경우는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81항은 고용부 법이라서……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저희 고용노동부……

○최강욱 위원 아, 이것 고용노동부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이것은 아까 장동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지금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거랑 같이 논의돼야 될 필요가……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류돼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과정에서도 아셨을 것 아니에요? 협의가 끝났는데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게 올라와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얽히게 된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숙련기술장려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요 국유재산특례법도 개정이 돼야 되는데 당시 소위 논의할 때는……

○최강욱 위원 선후가 바뀌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선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저희 게 먼저 가고 그쪽에서 뒤에 논의가 되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고……

○최강욱 위원 제출된 것은 비슷한데?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제출된 것은 같은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 발의를 했기 때문에……

○**최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도 같은 시기에 했을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협의도 같은 시기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뒤에 그쪽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라서 자세하게 검토의견이 오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노위 소위 심사 단계에서는.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소위 회부 의견, 전체회의 계류 의견…… 단일 의견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소위 회부하자고 하시는 의견과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이 병존하는 안건도 있습니다. 특히 86항 87항 88항 같은 경우에, 86항 같은 경우에 장동혁 위원님은 2소위 회부 의견이고 지금 환경부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단기간 내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그래서 차관님 의견을 존중해서 장동혁 위원님이 2소위 회부 의견이기는 하지만 차관님 말씀대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이견을 해소하는 걸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87항 같은 경우 박형수 위원님께서 2소위 회부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이탄희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계류 의견을 내셨는데 두 분 위원님 말씀들이 다 경청할 만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박형수 위원님, 전체회의에 일단 한번 계류해 보시고 제기하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 전체회의 때 2소위 회부로 그렇게……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정점식 위원** 기구를 새로 설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문 조정을 안 하는 한 아마 기재부와 이견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큼니다. 차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기재부 생각과 맞춰서 한번 저희가 새로운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그 새로운 안이라는 게 결국은 법률안 조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2소위에다가 회부를 해 놓고 의견 받아 가지고, 그게 더 빨리 처리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그렇습니다.

87항은 2소위 회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88항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님께서 2소위 회부 의견이 있었고 조정훈 위원님께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라고 했는데 어떻든 좋을 것 같아요.

유상범 위원님, 전체회의에 계류해도 무방하시겠지요?

○**유상범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합니다.

이런 이견 조정이 안 되면 위원장이 처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제8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제87항 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85항·86항·88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섭 차관님, 유제철 차관님, 수고 많으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도 거의 밤 12시까지 수고하셨고 오늘도 하루 종일 법안 심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그간에 즉 법안 심사를 해 보면, 타위법을 해 보면 항상 순서가 정무위부터 즉 이렇게, 이게 건제순인지 어떤지 몰라도 법사위 관례대로 즉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다 보면 지금 환노위까지는 했지만 과방위, 산중위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보건복지위는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오늘 보건복지위가 제일 마지막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의하는 순서를 돌리듯이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순서를 돌려 가면서 하면 각 상임위나 아니면 부처에서 섭섭함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최강욱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정점식 위원 우리 질의 순서 돌리듯이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지요?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면……

○정점식 위원 아니, 제일 처음 했던 팀을 제일 끝으로 보내고 두 번째 했던 팀을 제일 처음, 이렇게 하나씩 밀어 올려 가지고……

○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실장님 또 수석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최강욱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하나 여쭙 볼게요.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순서가 꼭 법무부장관이 맨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그것은 무슨 순서예요? 행정부 우선으로 하고 넘어가나?

○정점식 위원 국회법에 법사위 소관……

○최강욱 위원 우리 소관기관 건제순이예요?

○정점식 위원 예, 소관기관 건제순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이게 가나다순으로 돼 있는데……

○최강욱 위원 가나다순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37조 1항 2호 이래 가지고 법사위 이러면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다’ 감사원, ‘라’ 공수처, ‘마’ 헌재, ‘바’ 법원·군사법원 이렇게 국회법에 순서가 명기가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순서대로 하는 것 같고요.

○최강욱 위원 감사원 다음에 공수처 다음에 헌재가 나오네요, 그다음에 법원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국회법을 개정안을 내 보시든지……

○최강욱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이 순서대로하고도 또 안 맞다니까요, 우리 지금 업무보고했던 순서를 보면.

○위원장 김도읍 안 맞아요?

○최강욱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실장님, 다음부터는 그 순서대로 맞춰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지금까

지도 이 순서대로 안 했다면 제 생각에는 사법부가 우선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감사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부 각 부의 장관들이 나오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도읍 아마 나름대로 국회법에서 건제순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지 조금 더 논의를 해 봅시다.

○최강욱 위원 그래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도 사실은 안 맞는 거니까 법 개정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도읍 예, 뭐 그렇게……

○조정훈 위원 나오신 장분들이 민감하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바뀌세요. ‘다음 나 아니야?’ 뭐 이러시는데. 자꾸 밀리니까……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그것도 돌려 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기동민 위원 그것도 방법이라고……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기동민 위원 법안 심사 열심히 하는 것 환영할 일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집단과 개인이 정치적 목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적에 충실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해는 불식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타의 상임위에서 오늘도 항의 전화가 계속 오는 건 뭐냐면 왜 잡냐, 체계·자구 심사만 해야지 니들이 뭘데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해 놓은 걸 잡냐, 그래서 조금 더 상의해라라고 얘기했던 것인데요.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서신 하나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처 간 협의는 완료하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법안 심사하지 않겠다라든지, 그건 일반 법을 심사하는 데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그런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 그러니까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고유의 체계·자구 심사와 부처 간 협의자가 조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전제조건들은 갖춘 그런 법안 심사를 통과를 시켜 놓고 우리 법사위에 보내 주면 훨씬 더 매끄럽지 않겠냐는 그런 방침과 서신들을

정중하게 한번 보내 주시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훌륭한 제안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민주당에서는 뭐 김도읍 법사위원장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시면서 뭘 또 서한을……

(웃음소리)

○기동민 위원 그런 위대한 결단 하시는 것도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어떤 분이 오셔서 또 그만큼 더 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어제 박범계 위원께서도 제안하신, 고유법 할 때도 전문위원 보고한 그 섹터별로 하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겠다, 그것도 회의 진행할 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상임위별로 돌려 가면서 이렇게 순환해서 하는 것,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결로 하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 보다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그때 또 논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님들, 이틀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인숙	권철승	기동민	김남국
김도읍	김승원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형수	유상범	이탄희
장동혁	정점식	조정훈	최강욱

○청가 위원(2인)

전주혜 조수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전문위원	한석현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유인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석동현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가보훈처차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경찰청공공안전정보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황장	김도읍	김신한	김진	김유권	이송윤	이영	김최	남김	윤	김안	최	안
금순상도	기범창병인	제기원	상종기	동수	응성	중수	소성	장	중			
철관운훈	웅철섭	극중	철섭	재근	진식	환천	현	옥현	영	옥	혁	철